

특허법 ·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 특 · 실 심사사무취급규정, 우선심사고시 등 포함 -

2015. 2.



특 허 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목 차

○ 특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대비표	5
○ 실용신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대비표	235
○ 실용신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대비표(2006. 9. 30. 이전 시행)	293
○ 기타 특허 · 실용신안 심사관련 규정	355
- 특허 · 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357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380
- 특허 · 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388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411

특허·실용신안 법령 조문 대조표

법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1장 총칙 1조 2조 3-25조 28-28조의5	1장 총칙 1조 2조 준용(3조) 준용(3조)	63조 63조의2 64-68조 78조	14조 준용(15조) 준용(15조) 준용(15조)	6장 특허권자의 보호 126조 127조 128조 129조 130-132조	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준용(30조) 29조 준용(30조) - 준용(30조)	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92-198조의2 199조 200조 201조 202-208조 209조 210조 211조 214조	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준용(41조) 34조 준용(41조) 35조 준용(41조) 37조 38조 준용(41조) 40조
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9조 30조 32조 33-35조 36조 37-38조 41조 42조 42조의2 42조의3 43-44조 45조 46-47조 51-52조 53조 54-56조	2장 실용등록요건 및 실용등록출원 4조 5조 6조 준용(11조) 7조 준용(11조) 준용(11조) 8조 8조의2 8조의3 준용(11조) 9조 준용(11조) 준용(11조) 10조 준용(11조)	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79조 80-81조의3 82조 83-84조 85조 86조	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6조 준용(20조) 17조 준용(20조) 18조 19조	7장 심판 132조의2 132조의3 133조 133조의2 134조 135-137조 138조 139-166조 170-172조 176조	7장 심판·재심 및 소송 - 준용(33조) 31조 준용(33조) 31조의2 준용(33조) 32조 준용(33조) 준용(33조) 준용(33조)	11장 보칙 215-220조 221조 222-224조의5	9장 보칙 준용(44조) 42조 준용(44조)
3장 심사 57-58의2조 59조 60-61조 62조	3장 심사 준용(15조) 12조 준용(15조) 13조	5장 특허권 87조 88조 89-92조 92조의2-92조의5 93조 94조 95조 96조 97조 98조	5장 실용신안권 21조 22조 - 22조의2-22조의5 22조의6 23조 - 24조 준용(28조) 25조 준용(28조) 26조 27조 준용(28조) 준용(28조)	8장 재심 178-185조	준용(33조)	12장 벌칙 225조 226조 227조 228조 229조 229조의2 230조 231조 232조	10장 벌칙 45조 46조 47조 48조 49조 49조의2 50조 51조 52조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장 총칙		3장 심사		5장 심판 및 재심	
1조	1조	1조	1조	36조의2-37조의3	준용(17조)	57조	14조
2-4조	준용(9조)	1조의2-11조의2	준용(17조)	38조	9조	57조의2-73조	준용(17조)
5조	3조	12조	2조	39조	10조		
6조	4조	13조-19조의2	준용(17조)	40조	준용(17조)	6장 특허협력조약 에 의한 국제출원	
7조	-	2장 특허출원		40조의2	10조의2	74-113조의2	준용(17조)
7조의2	6조의2	20조의2	준용(17조)	40조의3	10조의3	114조	15조
		21조	3조	41-48조	준용(17조)	114조의2-119조	준용(17조)
2장 심사 및 심판	준용(9조)	21조의2	3조의2	4장 특허증 및 특허권		7장 보칙	
8-8조의4	5조	21조의3	3조의3	50조	11조	120-120조의6	준용(17조)
9조	6조	21조의4	4조	50조의2	12조	121조	16조
10조		22조	5조	50조의3	13조		
3장 보칙		23조	6조	51조	준용(17조)		
18조	준용(9조)	24-27조	준용(17조)	52-54조	-		
19조	7조	28조	7조	54조의2	13조의2		
19조의2	7조의2	29조	준용(17조)	54조의3	13조의3		
20조	8조	30조	8조	54조의4	13조의4		
		31-36조	준용(17조)	54조의5	13조의5		
				55-55조의2	준용(17조)		
				56조	13조의6		

특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대비표

목 차

제 1 장	총칙	7
제 2 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28
제 3 장	심사	55
제 4 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72
제 5 장	특허권	78
제 6 장	특허권자의 보호	107
제 7 장	심판	110
제 8 장	재심	140
제 9 장	소송	143
제10 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5
제11 장	보칙	198
제12 장	벌칙	208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 <개정 2014.6.11></p> <p>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p>[전문개정 2014.6.11]</p> <p>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제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 [전문개정 2001.6.27]</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p> <p>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p>[본조신설 199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40조 또는 제140조의 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 법 제5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8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p>[전문개정 2014.6.11]</p> <p>제7조(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p>		<p>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p> <p>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p> <p>[제목개정 2014.12.30.]</p> <p>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특허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 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2014.12.30.> ③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2014.1.29., 2014.4.10.> ④ 삭제 <2006.12.29.> 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⑦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⑧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7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⑨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9.29., 2006.12.29., 2014.4.10.></p> <p>[전문개정 1998.12.31.]</p> <p>[제목개정 2014.12.30.]</p> <p>제5조의2(포괄위임)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p> <p>④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p> <p>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3.></p> <p>[본조신설 1998.12.31.]</p> <p>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구분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p>[본조신설 1998.12.31.]</p> <p>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본조신설 1998.12.31.]</p> <p>제10조(서류의 원용)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법 제30조제2항·법 제54조제4항·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2.23></p> <p>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법 제30조제2항·법 제54조제4항·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9.29></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7.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p>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p>[전문개정 2014.6.11]</p> <p>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명령 등) ①특허청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p>		<p>조약규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서·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전문개정 1999.7.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동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 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 <p>②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특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 날제정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p>		<p>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에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목개정 2014.12.30]</p> <p>제16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p> <p>②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6조(절차의 무효)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p>		<p>견서제출기간 및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6.22, 1998.2.23, 1999.7.1, 2001.6.30, 2003.5.17, 2007.6.29, 2014.12.30></p> <p>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p> <p>④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신설 1998.12.31></p> <p>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 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자 3.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 <p>[전문개정 2013.6.28.]</p> <p>제17조(기간경과 구제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p>[전문개정 2014.6.11]</p> <p>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려는 자 2. 법 제17조에 따라 절차의 추후보완을 하려는 자 3. 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 <p>[전문개정 2013.6.28]</p> <p>제7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3.></p> <p>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p> <p>제18조(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9조의 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p>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p>[전문개정 2014.6.11]</p> <p>제22조(수계신청) ①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p>		<p>정에 의하여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p> <p>제18조의2(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p> <p>③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p> <p>④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⑤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p> <p>⑥제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⑦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3조(절차의 중지) ①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p> <p>②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③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4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p>		<p>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2002.2.28]</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p>제26조 삭제 <2011.12.2></p> <p>제27조 삭제 <2001.2.3></p> <p>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p> <p>②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 		<p>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9.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p> <p>③ 삭제 <1998.9.23></p> <p>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목개정 2014.6.11]</p>		<p>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출원인·심판청구인 그밖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8.12.31.]</p> <p>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2.2.28.]</p> <p>제3조(서류의 제출) ①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p> <p>② 삭제 <2003.5.17.></p> <p>③ 삭제 <2003.5.17.></p> <p>④ 삭제 <2003.5.17.></p> <p>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p> <p>②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관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2.28.]</p> <p>제4조(서류의 사용자 등)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p>	<p>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p> <p>2. 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에 관한 사무</p>	<p>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p> <p>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p> <p>2.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p> <p>②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p> <p>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12.29.></p> <p>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p> <p>③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9.29.></p> <p>제9조(출원인코드의 부여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7.12.11, 2008.9.30, 2009.6.30, 2013.3.23></p> <p>1. 출원인</p> <p>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3. 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p> <p>4. 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p> <p>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p> <p>[본조신설 2012.1.6]</p>	<p>3. 심사청구인</p> <p>4. 삭제 <2006.9.29></p> <p>5. 삭제 <2006.9.29></p> <p>6. 정정청구인</p> <p>7. 우선심사신청인</p> <p>8.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p> <p>8의2. 재심사청구인</p> <p>9.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p> <p>10. 특허권자</p> <p>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p> <p>12. 질권자</p> <p>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p> <p>③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서명·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008.12.31></p> <p>1. 삭제 <2001.6.30></p> <p>2. 삭제 <2001.6.30></p> <p>④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⑤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p> <p>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③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p>		<p>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3.6.28></p> <p>⑦제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8></p> <p>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28></p> <p>[전문개정 1998.12.31.]</p> <p>제9조의9(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0.7.27.]</p> <p>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p> <p>②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2.2.28.]</p> <p>제9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28조의3제4항</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p> <p>④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p> <p>②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만을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③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6.26, 2001.6.27, 2007.6.28></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p>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12.29, 2011.2.25,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삭제 <2006.12.29> 3. 삭제 <2006.12.29> 4. 정정발급신청서 5. 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6.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7.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8. 삭제 <2003.5.17> <p>② 삭제 <2002.2.28></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영 제13조에 따라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7.1, 2002.2.28, 2005.2.11, 2014.12.30></p> <p>[본조신설 1998.12.31]</p> <p>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출원인 코드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p>[전문개정 2012.6.28]</p> <p>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p> <p>③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7.6.26, 1999.6.30, 2006.9.28, 2011.2.22></p> <p>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⑤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p> <p>⑥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1993.12.31, 2011.2.22></p> <p>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개정 1993.12.31></p> <p>⑧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2.22></p> <p>⑨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1.31, 2011.2.22></p> <p>⑩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11.2.22></p> <p>⑪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2></p> <p>⑫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1993.12.31, 2007.6.28, 2011.2.22></p>	<p>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12.6.28.></p> <p>②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6.12.29.></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1.></p> <p>[본조신설 1998.12.31.]</p> <p>제9조의5(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특허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온라인 제출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2006.12.29.></p> <p>[본조신설 1998.12.31.]</p> <p>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8.]</p> <p>제9조의7(동시제출의 특례) 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③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p> <p>④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6.11></p> <p>제29조(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p> <p>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p> <p>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p> <p>②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p> <p>③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p>		<p>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2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p> <p>[본조신설 1998.12.31.]</p> <p>제9조의8(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p> <p>[전문개정 2003.5.17]</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p> <p>④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p> <p>⑤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p> <p>⑥제4항을 적용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p> <p>⑦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p> <p>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②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p> <p>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p> <p>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 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개정 2015.1.28., 시행 2015. 7. 29.></p> <p>제31조 삭제 <2006.3.3></p> <p>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p>		<p>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6.30></p> <p>[본조신설 1993.12.31]</p> <p>[제목개정 2001.6.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p> <p>③ 삭제 <1998.12.31.></p> <p>제33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2001.6.30., 2006.9.29.></p> <p>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36조(선출원) ①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p> <p>②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p> <p>③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p> <p>④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p>⑤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p>		<p>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p> <p>③ 삭제 <1998.12.31.></p> <p>제33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2001.6.30., 2006.9.29.></p> <p>제40조(동일출원의 심사)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처리되거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 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1., 2014.12.30.></p> <p>제34조(협의결과 신고)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⑥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p> <p>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p> <p>③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p> <p>②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④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⑤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⑦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p>		<p>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p> <p><신설 2001.6.30></p> <p>[제목개정 2001.6.30]</p> <p>제27조(지분등의 기재)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전문개정 2014.6.11]</p> <p>제39조 삭제 <2006.3.3></p> <p>제40조 삭제 <2006.3.3></p> <p>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p> <p>②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p> <p>제12조(비밀취급절차) ①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출원인·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p>	<p>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p> <p>②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34조(협의결과 신고)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서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 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제35조(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전문개정 2006.9.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⑤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p> <p>⑥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p> <p>⑦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p> <p>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p> <p>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p> <p>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p> <p>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①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p> <p>②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 특허청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4조(보상금) ①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2006.9.28></p> <p>②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방위사업청장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42조(특허출원) ①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p>②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p>③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p>	<p>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6.9.28.></p> <p>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p> <p>②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6.3., 1999.6.30., 2008.2.29., 2013.3.23.></p> <p>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p>[제목개정 2006.9.28.]</p> <p>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p>②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p>	<p>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p> <p>③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의 명칭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p>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p> <p>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p> <p>④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p>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p> <p>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p> <p>⑤ 삭제 <2014.6.11></p> <p>⑥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p> <p>⑦ 삭제 <2014.6.11></p> <p>⑧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p> <p>⑨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p> <p>[제목개정 2014.6.11]</p>	<p>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 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p> <p>③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4.12.30></p> <p>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를 말한다)를 적을 때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p> <p>[전문개정 2009.6.26]</p> <p>제4조(미생물의 분양) ①제2조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1997.6.26., 2003.6.13., 2007.6.28., 2009.6.26., 2014.12.30></p> <p>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p> <p>2.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제2조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로부터 미생물 분양에 대한 허락을 받은 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p> <p>[제목개정 2014.12.30.]</p>	<p>2. 기술분야</p> <p>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p> <p>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p> <p>가. 해결하려는 과제</p> <p>나. 과제의 해결 수단</p> <p>다. 발명의 효과</p> <p>5. 도면의 간단한 설명</p> <p>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p> <p>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p> <p>[전문개정 1998.12.31]</p> <p>[제목개정 2001.6.30.]</p> <p>제21조의4(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p> <p>①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p> <p>②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3.1.3.]</p> <p>[제21조의2에서 이동 <2014.12.30.>]</p> <p>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p> <p>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6.9.28, 2007.6.28, 2014.12.30></p> <p>②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p> <p>③ 삭제 <1999.6.30></p> <p>④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p> <p>⑤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백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p> <p>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6.9.28></p> <p>⑦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p> <p>⑧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0]</p>	<p>서류 1통 [전문개정 1993.12.31.]</p> <p>제23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12.31., 2002.2.28.,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2.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목개정 2014.12.30.]</p> <p>제24조(특허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01.6.30.]</p> <p>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특허출원의 특허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8.12.31.></p> <p>②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12.31.,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전문개정 2006.9.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40조 또는 제140조의 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 법 제5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8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营业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p> <p>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p> <p>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p> <p>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p> <p>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p> <p>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p> <p>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p> <p>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p> <p>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p> <p>②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p> <p>③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4.6.11]</p> <p>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①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p>		<p>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p> <p>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p> <p>[제목개정 2014.12.30]</p> <p>제24조(특허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p> <p>[제목개정 2001.6.30.]</p> <p>제4조(서류의 사용자 등)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p> <p>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수 있다.</p> <p>②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p>④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p> <p>⑤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⑥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4.6.11]</p>		<p>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p>②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p> <p>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①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p> <p>②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12.30] [중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4로 이동 <2014.12.30>]</p> <p>제21조의3(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①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43조(요약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①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p>	<p>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p>	<p>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14.12.30]</p> <p>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2014.12.30></p> <p>②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2014.12.30></p> <p>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p> <p>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본조신설 1996.6.22] [제목개정 2003.5.17]</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p>[전문개정 2003.6.13]</p>	<p>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제47조·제90조제6항·제92조의3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p> <p>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46조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1998.12.31]</p> <p>제16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및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p>②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1996.6.22, 1998.2.23, 1999.7.1, 2001.6.30, 2003.5.17, 2007.6.29, 2014.12.30></p> <p>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p> <p>④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신설 1998.12.31></p> <p>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제47조·제90조제6항·제92조의3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p> <p>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p> <p>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p> <p>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 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p> <p>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⑤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 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48조 삭제 <2001.2.3></p> <p>제49조 삭제 <2006.3.3></p> <p>제50조 삭제 <1997.4.10></p> <p>제51조(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42조(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14.1.29, 2014.4.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 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연월일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52조(분할출원) ①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p>		<p>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7.6.29, 201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 <2006.9.29> 4. 삭제 <2006.9.29>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p>②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9.6.30, 2014.1.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결정연월일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p>③ 삭제 <1997.7.1> [제목개정 2006.9.29]</p> <p>제29조(분할출원)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제66조에 따른 특허거절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 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개정 2015.1.28., 시행 2015. 7. 29.> <p>②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출원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p>③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④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⑤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p>		<p>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삭제 <2006.9.29> <p>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p> <p>③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p> <p>④ 삭제 <1998.12.31.></p> <p>제38조(심사의 순위) ①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4.10.></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4.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한 후 그 변경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 특허청장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p> <p>⑥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53조(변경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p>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p>③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p>④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p>		<p>제30조(변경출원)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p>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p> <p>[전문개정 2006.9.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로 본다. <개정 2014.6.11></p> <p>⑤ 삭제 <2014.6.11></p> <p>⑥변경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p> <p>⑦특허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4.6.11></p> <p>⑧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11></p> <p>[전문개정 2006.3.3]</p> <p>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p>②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p> <p>③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p>		<p>제8조(증명서류의 제출) ①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7.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p> <p>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p> <p>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p> <p>⑤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p> <p>2. 그 특허출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p> <p>3. 그 특허출원이 제3항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p> <p>⑥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p> <p>⑦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신설 2010.7.27.></p> <p>1.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특허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3., 2005.2.11., 2009.6.30., 2010.7.27.></p> <p>1. 동맹국중 1국의 영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p> <p>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p> <p>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p> <p>④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서류명 및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1.6.30., 2010.7.27.></p> <p>[제목개정 2001.6.30.]</p> <p>제10조(서류의 원용)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 법 제7조·법 제30조제2항·법 제54조제4항·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2.23.></p> <p>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법 제30조제2항·법 제54조제4항·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때에는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9.29.></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7.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p>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제47조·제90조제6항·제92조의3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p> <p>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9.29, 2006.12.29, 2014.12.30></p> <p>②법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p> <p>④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중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06.12.29, 2007.6.29, 2014.12.30></p> <p>⑤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14.12.30></p> <p>⑥법 제54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계지식소유권기구(「세계지식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소유권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하 이 조에서 "접근코드"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2.30></p> <p>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p> <p>[전문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05.2.11]</p> <p>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제47조·제90조제6항·제92조의3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p> <p>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이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p> <p>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p> <p>4.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p> <p>②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6조제1항제3호, 제98조, 제103조, 제105조제1항·제2항, 제129조 및 제136조제4항(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25조,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p> <p>④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p> <p>⑤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선출원이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p>		<p>2006.12.29, 2009.6.30, 2011.12.29</p> <p>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전문개정 1998.12.31]</p> <p>제19조(포기 또는 취하)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②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06.12.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1.6.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 선출원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⑥제4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제29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2.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p>⑦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 여부의 결정, 실용신안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p>②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p> <p>③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심사 <개정 2014.6.11></p> <p>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①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p>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할 사람 2. 삭제 <2006.9.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할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할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할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p>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5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2006.9.28., 2013.4.3.></p> <p>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 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3.></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p> <p>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7.6.26.] [제목개정 2014.12.30.]</p> <p>제2조(미생물의 기탁) ①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p> <p>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기탁한 자는 특허출원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취지를 적고,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수탁증 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p> <p>③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 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4.12.30></p> <p>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9.28, 2011.2.22,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가 없을 것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p>②조사·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p> <p>③조사·분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분류 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2006.9.28,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인력·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31, 2006.9.28, 2014.12.30> [본조신설 1992.10.27] [제목개정 2014.12.30]</p> <p>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사·분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2. 특허분류의 부여 업무 3. 그 밖에 특허출원 심사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②조사·분류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14.12.30></p> <p>③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p> <p>④제3항의 재의뢰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본조신설 1992.10.27] [제목개정 2014.12.30]</p> <p>제8조의4(미생물 기탁·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기관등 또는 그 기관등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등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p>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p> <p>②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는 것 2.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 3.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는 것 <p>②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력·시설, 업무수행 계획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12.30]</p>	<p>제36조의2(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본조신설 2007.6.29]</p> <p>제38조(심사의 순위) ①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4.10></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4.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③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p> <p>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나.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한 후 그 변경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p> <p>2. 특허청장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p> <p>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p> <p>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p> <p>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p> <p>②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p> <p>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p> <p>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p> <p>④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p>②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p>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6.23, 2001.6.27, 2005.1.31, 2006.9.28, 2007.6.28, 2007.6.29, 2008.9.30, 2009.6.26, 2013.6.28,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p>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p>	<p>제37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법 제60조에 따른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29, 2007.6.29, 2014.12.30></p> <p>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p> <p>제39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 또는 「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9.7.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p>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p> <p>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p> <p>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p> <p>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p> <p>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특허출원</p> <p>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p> <p>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p> <p>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p> <p>[전문개정 1999.6.30.]</p> <p>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①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6·6·3, 1999·6·30, 2008.2.29., 2013.3.23.></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4.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p> <p>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p> <p>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p> <p>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p> <p>[전문개정 2014.6.11]</p> <p>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6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및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6.22, 1998.2.23, 1999.7.1, 2001.6.30, 2003.5.17, 2007.6.29, 2014.12.30></p> <p>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p> <p>④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신설 1998.12.31></p> <p>제37조의3(심사참고자료) 특허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5.17.,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본조신설 1998.12.31.] [제37조의2에서 이동 <2009.6.30.>]</p> <p>제41조(의견서) 법 제63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3항, 법 제67조의2제2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5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p> <p>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7.6.29., 201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 <2006.9.29.> 4. 삭제 <2006.9.29.>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p>②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9.6.30., 2014.1.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64조(출원공개)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특허공보) ①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p> <p>②등록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09.6.26., 2013.6.28.,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p>6의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게재한다)</p>	<p>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결정연월일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p>③ 삭제 <1997.7.1.> [제목개정 2006.9.29.]</p> <p>제45조(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63조의2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6.9.29]</p> <p>제43조(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은 당해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용특허공보 또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개정 1997.7.1.> [제목개정 1997.7.1.]</p> <p>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2014.12.30></p> <p>②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p> <p>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p> <p>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③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주소 및 출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p> <p>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10.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p> <p>11. 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p> <p>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13.6.28., 2014.12.30.></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p> <p>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p> <p>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p> <p>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5.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p> <p>5의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p> <p>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p>	<p>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2014.12.30></p> <p>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 신청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p> <p>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p> <p>[본조신설 1996.6.22] [제목개정 2003.5.17]</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65조(출원공개 효과) ①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p> <p>②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p> <p>④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⑤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제129조·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p> <p>⑥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p>	<p>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p> <p>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p> <p>④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p> <p>⑤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 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p>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66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 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⑤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67조(특허여부결정의 방식) ①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1조(의견서) 법 제63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3항, 법 제67조의2제2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5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p> <p>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p> <p>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p> <p>제48조(거절이유통지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7.6.29., 201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3. 삭제 <2006.9.29.> 4. 삭제 <2006.9.29.>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9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p>②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1.6.30., 2006.9.29., 2009.6.30., 2014.1.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번호 2. 발명의 명칭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연월일(특허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특허거절결정의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7. 결정연월일 8. 직권보정 사항이 있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특허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p>③ 삭제 <1997.7.1.> [제목개정 2006.9.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있거나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①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2.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p>②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3.22]</p> <p>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예외 준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37조의2(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①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30] [중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09.6.30>]</p> <p>제41조(의견서) 법 제63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3항, 법 제67조의2제2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5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69조 삭제 <2006.3.3></p> <p>제70조 삭제 <2006.3.3></p> <p>제71조 삭제 <2006.3.3></p> <p>제72조 삭제 <2006.3.3></p> <p>제73조 삭제 <2006.3.3></p> <p>제74조 삭제 <2006.3.3></p> <p>제75조 삭제 <2006.3.3></p> <p>제76조 삭제 <2006.3.3></p> <p>제77조 삭제 <2006.3.3></p> <p>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78조의2 삭제 <2006.3.3></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6.11></p> <p>제79조(특허료)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填)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p>		<p>제55조의2(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p> <p>③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p> <p>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p> <p>⑤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p>⑥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⑦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나 보전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2014.6.11] 제81조의3제3항 [시행일:2015.1.1] 제81조의3</p> <p>제82조(수수료)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p>		<p>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2005.9.1, 2008.9.3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법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 2008.9.3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p>[본조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03.5.17]</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p>②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p>②특허청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85조(특허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p>②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50조(특허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p> <p>②특허청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p> <p>③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해당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p> <p>④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특허증(이하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4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9서식 [제목개정 2014.12.30.]</p> <p>제50조의2(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4.12.30.></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증이 특허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p> <p>③특허청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한 후 법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④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하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9서식 <p>[본조신설 2006.4.28.] [제목개정 2014.12.30.]</p> <p>제50조의3(특허증 등의 재발급) 특허청장은 특허권자가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분실 및</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p> <p>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p>		<p>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본조신설 2006.4.28.] [제목개정 2014.12.30.]</p> <p>제51조(특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허증의 재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신청 3. 제50조의3에 따른 특허증, 휴대용 특허증,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재발급신청 <p>②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특허증 또는 휴대용 특허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등 외국어특허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2.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의 발급신청 <p>④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1.2.25.> [제목개정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p> <p>③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성명·주소 및 특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④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⑤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p> <p>②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p> <p>②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6.3, 2000.6.23, 2005.1.31, 2007.6.28, 2008.9.30, 2011.12.2, 2013.4.3></p> <p>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p> <p>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원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p>②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p> <p>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⑥연장등록출원인은 특허청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p>	<p>(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제목개정 2011.12.2]</p>	<p>제5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2.28, 2006.12.29, 201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목개정 2011.12.2]</p> <p>제53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7.7.1, 1998.12.31, 2008.9.30,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p>[제목개정 2011.12.2]</p> <p>제54조(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11.12.2, 2014.1.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에만 보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p>[제목개정 2011.12.2.]</p> <p>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40조 또는 제140조의 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p>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 법 제5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8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p> <p>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p> <p>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p> <p>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p> <p>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p> <p>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p> <p>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p> <p>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p> <p>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p> <p>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p> <p>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p> <p>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p> <p>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p> <p>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p> <p>[제목개정 2014.12.30.]</p> <p>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p>		<p>[시행일 : 2015.7.1.] 제11조의2</p> <p>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12.29.></p> <p>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p> <p>③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9.29.></p> <p>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제47조·제90조제6항·제92조의3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p> <p>제54조(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p>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p>[전문개정 2014.6.11]</p>		<p>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p> <p><개정 2001.6.30., 2011.12.2.,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p>[제목개정 2011.12.2.]</p> <p>제54조(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p> <p><개정 2001.6.30., 2011.12.2.,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법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p>[제목개정 2011.12.2.]</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 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 35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p>[본조신설 2011.12.2]</p>	<p>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의 개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개임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라.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특허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마. 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바.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사. 법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p>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2.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3.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5.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6.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같은 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안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7.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아. 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p> <p>차. 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p> <p>카.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3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한 경우(법 제170조에 따라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특허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p> <p>파.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p>	<p>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신청·보정·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p> <p>[본조신설 2011.12.2]</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p> <p>하. 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p> <p>거. 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p> <p>너.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p> <p>더. 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p> <p>러. 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p> <p>머. 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 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p> <p>2.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가. 법 제7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p> <p>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p> <p>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p> <p>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p> <p>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p> <p>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p> <p>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p> <p>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p> <p>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p> <p>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p> <p>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p> <p>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p> <p>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의 기간</p> <p>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p> <p>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p> <p>3.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p> <p>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p> <p>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p> <p>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p> <p>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p> <p>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하는 기간</p> <p>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9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92조의2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 대상 특허권의 특허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p>②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p> <p>③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p> <p>④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1.12.2]</p>	<p>차, 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p> <p>[본조신설 2011.12.2]</p>	<p>제54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92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2011.12.2]</p> <p>제54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9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가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1.12.2]</p> <p>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40조 또는 제140조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 법 제5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8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p> <p>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p> <p>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p> <p>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p> <p>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p> <p>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p> <p>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p> <p>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p> <p>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절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제목개정 2014.12.30.]</p> <p>제12조(특허번호등의 표시) 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 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12.29.> ②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후 그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 ③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1998.2.23., 1998.12.31., 2001.6.30., 2006.9.29.></p> <p>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제47조·제90조제6항·제92조의3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54조제7항 또는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보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p>[본조신설 2011.12.2]</p> <p>제9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p>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2009.6.30., 2011.1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p> <p>제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p>[본조신설 2011.12.2.]</p> <p>제54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③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p>[본조신설 2011.12.2]</p> <p>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p> <p>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p>다. <개정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특허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p>[본조신설 2011.12.2.]</p> <p>제56조(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p> <p>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50조(특허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특허권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p> <p>② 특허청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특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2006.12.29, 2011.2.25, 2014.12.30></p> <p>③ 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해당특허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2014.12.30></p> <p>④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특허증(이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00조(전용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p>		<p>"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9서식 [제목개정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2조(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⑦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발명에 대한 둘 이상의 특허 중 그 하나의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2.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이 동일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3. 특허를 무효로 하고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4.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그 고안과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의 원실용신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p>②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05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p>②특허출원일 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한 전용실시권</p> <p>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p> <p>③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6조(특허권의 수용) ①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p> <p>②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p> <p>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②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p> <p>③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 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p>②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p> <p>④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p>⑤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p> <p>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p> <p>⑥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p>⑧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p>⑨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08조(답변서의 제출) 특허청장은 재정의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의 부분(副本)을 그 청구에 관련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재정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10조(재정의 방식 등) ①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3. 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표시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4. 그 밖에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경우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 <p>③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청구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0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청구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11조(재정서등본의 송달)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11조의2(재정서의 변경) ①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하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12조(대가의 공탁)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특허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전문개정 2014.6.11]</p> <p>제113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14조(재정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제정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p>②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16조 삭제 <2011.12.2></p> <p>제117조 삭제 <2001.2.3></p> <p>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21조(질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 소멸)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6.11></p> <p>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p>		<p>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p>[전문개정 2014.6.11]</p> <p>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p> <p>③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p> <p>④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p> <p>⑥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p>[전문개정 2014.6.11]</p> <p>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32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심판 <개정 2014.6.11></p> <p>제132조의2(특허심판원) ①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①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p>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할 사람 2. 삭제 <2006.9.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할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할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할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p>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할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p>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3.></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p> <p>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p> <p>[전문개정 1997.6.26.] [제목개정 2014.12.30.]</p>	<p>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 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32조의4 삭제 <2001.2.3></p> <p>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p>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2002.2.28>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p> <p>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p> <p>제73조(준용규정) 법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30]</p> <p>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2002.2.28>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p> <p>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p> <p>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p> <p>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p> <p>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p> <p>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p> <p>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p> <p>②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p> <p>③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④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③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분을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 중 "제162조제</p>	<p>제19조(특허공보) ①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p> <p>②등록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09.6.26., 2013.6.28.,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p>6의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게재한다)</p>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②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p> <p>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p> <p>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6.9.29> 2.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p>②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20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로 본다.</p> <p>⑤제4항을 적용할 때 제133조제1항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p> <p>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10.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p> <p>11. 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p> <p>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13.6.28., 2014.12.30.></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p> <p>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p> <p>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p> <p>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p> <p>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5.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p> <p>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p> <p>5의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p> <p>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p>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4.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7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p> <p>제41조(의견서) 법 제63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3항, 법 제67조의2제2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5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2014.12.30></p> <p>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p> <p>제57조의2(정정청구서)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p> <p>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3.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7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2006.9.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p>②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p>④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p> <p>⑤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p>	<p>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 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p>[전문개정 2014.6.11]</p> <p>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p> <p>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36조(정정심판) ①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p>②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p> <p>④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p> <p>⑤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p>⑥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⑧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p>		<p>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p> <p>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p> <p>제13조의4(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9.29., 2006.12.29., 20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6.9.29.> 2.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3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p>②제1항에 따른 보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 20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7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2001.6.30.]</p> <p>제41조(의견서) 법 제63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3항, 법 제67조의2제2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5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p> <p>⑨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p> <p>⑩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⑪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3조의 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p> <p>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p> <p>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p> <p>제41조(의견서) 법 제63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3항, 법 제67조의 2제2항, 법 제133조의2제4항, 법 제136조제5항 또는 법 제137</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2. 제1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②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따른 정정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3조의2제3항 중 "제133조제1항"은 "제137조제1항"으로 본다.</p> <p>⑤제1항에 따라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조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1.6.30, 2006.9.29, 2006.12.29, 2007.6.29, 2009.6.3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8.12.31]</p> <p>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 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p>		<p>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p> <p>제57조의2(정정청구서) 법 제133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법 제133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7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2006.9.29]</p> <p>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 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 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p>		<p>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p> <p>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 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p> <p>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p> <p>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p> <p>③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 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④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p> <p>1.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p> <p>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p> <p>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p> <p>⑤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②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p>1. 삭제 <2002.2.28.></p> <p>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p>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p> <p>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p> <p>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40조 또는 제140조의 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p> <p>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p> <p>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p> <p>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p> <p>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p> <p>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 법 제5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8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p> <p>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p> <p>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p> <p>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p> <p>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p> <p>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p> <p>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p> <p>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p> <p>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p> <p>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제132조의3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p>		<p>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p> <p>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p> <p>[제목개정 2014.12.30.]</p> <p>제57조(심판청구서) ①법 제133조·법 제134조·법 제135조 또는 법 제137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발명의 명칭 5. 특허거절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p>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p>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과 의 구체적인 대표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법 제13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1.6.30., 2002.2.28., 2003.5.17.,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p> <p>④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9.29., 2006.12.29.></p> <p>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례)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40조 또는 제140조의 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7.7.1., 1998.12.31., 1999.7.1., 2001.6.30., 2002.2.28., 2003.5.17.,</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005.2.11., 2006.9.29., 2006.12.29.,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1.2.25., 2011.12.2.,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 법 제5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8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营业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p> <p>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p> <p>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p> <p>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p> <p>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p> <p>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p> <p>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11.2.25.></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41조(심판청구의 각하) ①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p>②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p> <p>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p> <p>[제목개정 2014.12.30.]</p> <p>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46조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1998.12.31]</p> <p>제16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및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6.22, 1998.2.23, 1999.7.1, 2001.6.30, 2003.5.17, 2007.6.29, 2014.12.30></p> <p>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43조(심판관)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①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p>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할 사람 2. 삭제 <2006.9.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할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p>1999.7.1> ④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신설 199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할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 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할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7.6.26.] [제목개정 2014.12.30.]</p>	<p>제58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할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전문개정 2007.6.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45조(심판장) ①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①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4.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p>②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삭제 <2006.9.28.>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사람 <p>③심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2006.9.28., 2013.4.3.></p> <p>1. 특허심판원에서 2년 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할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사람 ④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4.3.></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심사관, 심판관, 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심사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0., 2013.4.3., 2013.11.20., 2014.12.30.></p> <p>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97.6.26.] [제목개정 2014.12.30.]</p>	<p>제60조(답변서 등) ①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p> <p>②법 제147조제3항·법 제156조제2항·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p>제149조(제척신청) 제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0조(심판관의 기피) ①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 [제목개정 2006.12.29]</p> <p>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 [제목개정 2006.12.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4조(심리 등) ①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삭제 <2001.2.3> ③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④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⑤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⑥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p>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분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30.]</p> <p>제65조(구술심리) ①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②구술심리에 있어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01.6.30.]</p> <p>제65조의2(증인의 신청 등) ①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1통</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⑦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11></p> <p>⑧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11></p> <p>⑨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신설 2014.6.11> [제목개정 2014.6.11]</p> <p>제155조(참가) ①제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p> <p>③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p> <p>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p> <p>⑤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②현장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2.28.]</p> <p>제62조(심판참가신청)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2.28] [제목개정 2006.12.29]</p> <p>제63조(증거의 첨부) ①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답변서·의견서 기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②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p>③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 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p> <p>④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p> <p>⑤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8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59조(직권심리) ①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60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①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가 서면인 때에는 그 등본을, 도면·건본 또는 물건인 때에는 실물에 갈음할 수 있는 복사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관련 서류에 건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12.29></p> <p>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p> <p>제69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법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②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62조(심결) ①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p> <p>②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p>③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p> <p>⑤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p>		<p>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3.5.17,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11.2.25></p> <p>③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제목개정 2002.2.28]</p> <p>제66조(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①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를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전에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p> <p>제66조의2(심리재개)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2.28.]</p> <p>제6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⑥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65조(심판비용) ①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p>		<p>3.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p> <p>4. 심판사건의 표시</p> <p>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p> <p>6. 결정연월일</p> <p>제68조(심판비용) 법 제1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비용계산서 및 그 증빙서류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③제132조의3,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p> <p>④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p> <p>⑤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p> <p>⑥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p> <p>⑦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67조 삭제 <1995.1.5></p> <p>제168조 삭제 <1995.1.5></p> <p>제169조 삭제 <1995.1.5></p> <p>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p> <p>②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p> <p>제60조(답변서 등) ①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p> <p>②법 제147조제3항·법 제156조제2항·법 제159조제1항 또는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전문개정 2002.2.28.]</p> <p>제73조(준용규정) 법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9.6.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p> <p>제172조(심사의 효력) 심사에서 밝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73조 삭제 <2009.1.30></p> <p>제174조 삭제 <2009.1.30></p> <p>제175조 삭제 <2009.1.30></p> <p>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심판관은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77조 삭제 <1995.1.5></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재심 <개정 2014.6.11></p> <p>제178조(재심의 청구)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72조(재심청구)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그 설명서에는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대비표를 적어야 한다)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정한다) 2의2. 정정명세서 및 도면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79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p>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목개정 2006.12.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의의 실시</p> <p>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p> <p>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原)통상실시권의 사업목적 및 발명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p>②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8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소송 <개정 2014.6.11></p> <p>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p>③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⑦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87조(피고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p>		<p>제16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및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6.22, 1998.2.23, 1999.7.1, 2001.6.30, 2003.5.17, 2007.6.29, 2014.12.30></p> <p>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p> <p>④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신설 199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p> <p>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전문개정 2014.6.11]</p> <p>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국제출원절차</p> <p>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14.6.11] <p>제193조(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계약국(締約國)의 지정 		<p>제90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9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전문개정 1999.7.1]</p> <p>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1999.7.1]</p> <p>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1999.7.1.]</p> <p>제75조(서류의 용어) 국제출원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적은 언어(이하 "</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계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p> <p>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p> <p>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p> <p>6. 발명의 명칭</p> <p>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③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p> <p>④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p> <p>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국제출원의 언어"라 한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증명서, 법인증명서, 그 밖에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76조(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 및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30.></p> <p>④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명령을 받은 해당 서류의 원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⑤제3항에 따라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2.4(g)(i)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2009.6.30., 2014.12.30.></p> <p>⑥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i)에 따라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p> <p>[전문개정 1999.7.1.]</p> <p>제77조(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2.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또는 도면 3. 출원인외의 특정인의 생산물·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내용 4. 국제출원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 <p>[전문개정 1999.7.1.]</p> <p>제78조(대리인의 선임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출원서 또는 제106조의23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이하 "국제예비심사청구서"라 한다)에 의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p> <p>②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위임장을 출원서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출원 후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 후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선임 또는 대표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p> <p>④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90.6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1999.7.1.]</p> <p>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에 따른 복대리인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전문개정 1999.7.1.]</p> <p>제80조(포괄위임장의 제출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조약규칙 90.5(b)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위임장 제출서에 포괄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포괄위임장의 사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서·국제예비심사청구서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포괄대리인 해임신고서 또는 포괄대리인 사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전문개정 1999.7.1.]</p> <p>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성명이나 명칭·주소·국적·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와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9.7.1.]</p> <p>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p> <p>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99.7.1.]</p> <p>[제목개정 2001.6.30.]</p> <p>제86조(우편의 지연) ①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제출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원인은 당해서류를 제출기간의 만료일 5일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또한 항공우편외의 방법으로는 도달에 통상 3일이상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서류를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출원인이 서류의 도달지연을 알게 된 날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월이내, 당해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당해서류가 제출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1999.7.1.]</p> <p>제87조(우편물의 망실) 제86조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당해우편물의 망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증거"는 각각 "증거 또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는 새로운 서류 및 새로운 서류가 망실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우편의 지연으로"는 각각 "우편물의 망실로"로, 동조제3항중 "당해서류"는 "망실한 서류를 대신하여 제출된 새로운 서류"로 본다.</p> <p>[전문개정 1999.7.1.]</p> <p>제88조의2(기간 미준수 구제) ①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은 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재지에서의 전쟁·혁명·폭</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동·과업·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와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에 따른 절차를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밟은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2.6.28.]</p> <p>제89조(조약규칙의 효력)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규칙에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3.12.31.]</p> <p>제91조(국제출원의 사용자) 법 제19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를 말한다. <개정 2011.2.25, 2013.3.23></p> <p>[전문개정 2008.12.31]</p> <p>제92조(출원서 등의 제출) ①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각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포함한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3통을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② 삭제 <2014.12.30.></p> <p>[전문개정 2003.12.31.]</p> <p>[시행일 : 2015.7.1.] 제92조제2항</p> <p>제93조(출원서 등의 서식) ①국제출원의 출원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 2014.12.30.></p> <p>②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은 별지 제43호서식, 청구범위는 별지 제44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45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014.12.30.> [전문개정 1999.7.1.] [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 2015.7.1.] 제93조제1항</p> <p>제93조의2(국가의 지정 등) ①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출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 2.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중 조약 제43조 또는 제44조가 적용되는 각 지정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3. 조약 제45조(1)이 적용되는 각 지정국의 지역특허[조약 제2조(iv)의 규정에 따른 특허를 말한다] 및 국내특허[조약 제45조(2)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한 것이라는 표시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규칙 4.9(b)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자국내 선출원에 대하여 취하되는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p> <p>제94조(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국제출원번호 및 그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p> <p>제95조(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법 제193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정한 사항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p> <p>제100조(국제출원일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국제출원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1999.7.1.]</p> <p>제100조의2(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①제99조의2제6항 본문에</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 100조에 따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제출을 취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 취하된 경우에는 제9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의 인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③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취하하려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8.12.31.]</p> <p>제102조(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①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 1년 4월(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 1년 4월과 우선일부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p> <p>②출원인이 조기국제공개를 신청한 후에 특허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기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조기국제공개신청을 취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개정 2006.12.29.></p> <p>③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우선일부 기산하여 만료되지 아니한 기간은 변경된 우선일부 그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 또는 추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p> <p>⑤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전문개정 1999.7.1.]</p> <p>제103조(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p> <p>1.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④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p> <p>1. 조약규칙 4.10(a)(ii)에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p> <p>2.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p> <p>3.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p> <p>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31.></p> <p>1.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것</p> <p>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p> <p>[전문개정 1999.7.1.]</p> <p>제104조(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수수료를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6bis.1(a)에 따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14.12.30.></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정 2001.6.30., 2006.12.29.> [전문개정 1999.7.1.]</p> <p>제106조의6(우선권서류의 제출) ①조약 제2조(vi)의 규정에 의한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에 그 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수리한 관청이 인정하는 당해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등본(이하 "우선권서류"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p> <p>②대한민국에 제출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우선권서류의 송달신청의 취지를 적거나 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달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6.12.29., 2008.12.31.></p> <p>③ 삭제 <2012.6.28.></p> <p>④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12.6.28.>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p>②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p>		<p>④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9(국제출원의 인증)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후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 출원시의 국제출원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조약규칙 22.1(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하여 그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p> <p>③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국제출원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1999.7.1.]</p> <p>제84조(명백한 잘못의 정정) ①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조약규칙 91.1(a)에 따라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에 조약규칙 91.1(a)에 따른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조약 제15조에 따른 국제조사(이하 "국제조사"라 한다) 또는 조약 제33조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이하 "국제예비심사"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 2. 조약규칙 91.1(b)(iii)에 따른 서류 <p>③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해당 서류가 특허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그 밖의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제91.1(h)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을 신청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약 제2조(xi)의 규정에 따른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정의 신청에 대하여 조약규칙 91.1(c)부터 (f)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잘못의 정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신청이 조약규칙 91.1(g)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7항에 따른 정정의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12.31., 2014.12.30.> 1.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일 ⑨특허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제97조(절차의 보완) 법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1. 보완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9.7.1] 제98조(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기간에 절차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약규칙 20.4(i)에 따라 그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이 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전문개정 1999.7.1]</p> <p>제99조(도면의 제출기간) ①법 제19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08.12.31, 2013.3.23> ②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면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9.7.1]</p> <p>제99조의2(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①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일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있는 경우 2.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누락된 부분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누락된 부분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락된 부분을 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각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④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보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p>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⑥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접수일을 법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접수일이 법 제19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날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08.12.31]</p> <p>제83조(국제출원 외의 서류의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제외한다)가 제2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p> <p><개정 2014.12.30.></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99.7.1.] [제목개정 2014.12.30.]</p> <p>제101조(절차의 보정) ①법 제195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9.30, 2008.12.31, 2013.3.23,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최소 1명의 출원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 2. 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중 최소 1명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p>②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할 것. 다만,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p> <p>3.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p> <p>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전문개정 1999.7.1]</p> <p>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법 제196조제1항 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p> <p>②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개정 2008.9.30></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2(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8(수수료의 반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97조(대표자 등) 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4(대표자의 지정) 법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의 대표자지정은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출원인중 첫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7(국제출원등의 취하)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청장에 대하여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12.31> 1.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경과한 경우 2. 조약 제23조(2) 또는 제40조(2)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취하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취하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1999.7.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98조(수수료) ①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6조의5(수수료납부서의 제출) 법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8(수수료의 반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국제출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3.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의 출원이 금지된 경우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된 조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약 제1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조사용사본(이하 "조사용사본"이라 한다)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었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p>[본조신설 1999.7.1.]</p> <p>제95조의2(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①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조약규칙 12.3(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12.3(d)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5.7.1., 2014.12.30.>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조사용 번역문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2003.12.31.]</p> <p>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11(국제조사의 대상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조약규칙 43bis.1의 규정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p> <p>②특허청장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2.11.></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1.,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④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5.2.11., 2014.12.30.></p> <p>⑤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30., 2012.6.28.,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1. 국제출원의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나. 단순히 발견한 동물·식물의 변종 다. 사업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라.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마. 정보의 단순한 제시 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p> <p>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p> <p>⑥국제출원의 청구범위 일부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4(a)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2014.12.30.></p> <p>⑦심사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2014.12.30.></p> <p>[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03.12.31.]</p> <p>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①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2. 표준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이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진술서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 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명령을 받은 당해서열목록 또는 진술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1., 2014.12.30.></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서열목록에 기재된 사항중 최초의 국제출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은 국제출원의 일부로 보지 아니한다.</p> <p>⑤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지 아니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p> <p>[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03.12.31.]</p> <p>제106조의13(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①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제106조의12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14(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p> <p>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④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15(추가수수료이의신청) ①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 <p>② 삭제 <2005.2.11.></p> <p>③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이</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의신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16(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가수수료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내용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p>⑤특허청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결정에 의한 금액을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때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⑥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17(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된 발명의 명칭은 심사관이 이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에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명의 명칭에 관하여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경우</p> <p>2.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이 조약규칙 4.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p> <p>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발명의 명칭을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18(요약서의 보정)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p> <p>1. 국제출원에 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요약서에 관하여 조약규칙 38.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p> <p>2. 국제출원에 포함된 요약서가 조약규칙 8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작성한 요약서를 국제조사보고서에 첨부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을 하거나, 심사관이 요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작성한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p> <p>④출원인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p> <p>1. 보정서 2통(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의견서 1통(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p>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⑤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의견진술이 있는 때에는 요약서의 보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요약서를 보정한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그 보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p> <p>[본조신설 1999.7.1.]</p> <p>[제목개정 2007.6.29.]</p> <p>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①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7. 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8.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 국제조사완료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p>②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 4. 견해서 작성일 5. 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p> <p>[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03.12.31.]</p> <p>제106조의20(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p> <p>②특허청장은 제106조의11제5항 또는 제10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14.12.30.]</p> <p>제106조의22(조사료의 반환) ①다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p> <p>②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료의 반환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4.12.30.>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23(국제예비심사청구) ①조약 제31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p> <p>②제1항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6.12.29., 200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규정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로부터 22월 <p>③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p> <p>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조약 제2장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지정국이 선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1.></p> <p>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후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24(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①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예비심사청구라는 표시 2. 출원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 4.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련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3.12.31.> 6. 보정에 관한 사항(조약규칙 53.9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p>②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p> <p>③출원인·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규칙 53.8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26(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4.4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7.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06조의27(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의 대상인 국제출원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완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p> <p>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28(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29(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6조의23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2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106조의2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중 최소 1인에 관하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06조의24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경우. 다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만, 같은 조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들 중 최소 1명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서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도달일에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p> <p>④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p> <p>⑤특허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p> <p>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4.12.30.></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31(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제106조의26·제106조의27제4항·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33(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를 제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보정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다. 보정의 이유 2의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 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 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34(국제예비심사의 개시) ①출원인이 조약규칙 69.1(d)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조약 제19조의 규정에</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의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국제예비심사 개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35(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조약 제33조(1)에 따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서 그 우선권주장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국어로 기재된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9.></p> <p>②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14.12.30.]</p> <p>제106조의36(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개시 전까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개정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p> <p>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p> <p>1의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p> <p>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p> <p>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p> <p>다. 보정의 이유</p> <p>1의3.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p> <p>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p> <p>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p> <p>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p> <p>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37(국제예비심사의 대상) ①특허청장은 제10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제예비심사를 하게 한다.</p> <p>②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조약 제34조(2)(c)에 따른 견해서(이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라 한다)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14.12.30.></p> <p>1. 제106조의1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p> <p>2.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현저히 불명료하거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유효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p> <p>3.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p> <p>③국제출원의 청구범위의 일부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종속항이 조약규칙 66.2(a)</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12 및 제106조의13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39(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①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34조(3)(a)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함이 없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 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예비심사를 하고 그 취지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14.12.30.> ③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감축하였으나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④제106조의14제5항·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의14제5항 중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하려는 자"로, 제106조의15 중 "조약 제17조(3)(a)"는 "조약 제34조(3)(a)"로 본다. <개정 2005.2.11., 2014.12.30.>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40(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①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당해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로 본다. <신설 2003.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에 국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6조의36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제106조의37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6조의38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서열목록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조약 제33조에 따른 신규성·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이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조약 및 조약규칙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p>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p> <p>④심사관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다.</p> <p>⑤제2항·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3.12.31.,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⑥제2항, 제4항 또는 제106조의23제3항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된 보정서(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청구범위 전체를 적은 보정서를 말한다) 2통 2.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p> <p>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p> <p>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p> <p>다. 보정의 이유</p> <p>2의2.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설명서 1통</p> <p>가.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차이점</p> <p>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p> <p>다.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에서 삭제된 청구항의 번호</p> <p>라. 보정서에 적혀 있는 청구항 중 보정된 청구항의 번호</p>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03.12.31.]</p> <p>제106조의41(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4.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6.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7. 제6호의 견해에 관련되는 문헌 8.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9.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p>②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p> <p>[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14.12.30.]</p> <p>제106조의42(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그 부속서류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4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은 국제조사 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14.12.30.]</p> <p>제106조의44(서류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 또는 그 출원인의 승낙을 얻은 자는 특허청장에 대하여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1999.7.1.] [제목개정 2014.12.30.]</p> <p>제106조의45(예비심사료등의 반환) ①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8의 규정에 의한 예비심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6조의23제5항·제106조의26·제106조의27제4항·제106조의29제4항 또는 제106조의3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전에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p>②특허청장은 조약규칙 57의 규정에 의한 취급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에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 2. 제106조의23제5항 또는 제106조의26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p>[본조신설 1999.7.1.]</p> <p>제106조의46(국제출원의 취하등) 제106조의7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국제출원등의 취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7.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p> <p>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p> <p>②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07조(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①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국적등의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등의 변경 또는 경정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p> <p>②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특허출원인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6.30></p> <p>[전문개정 1999.7.1] [제목개정 2001.6.30]</p> <p>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개정 1999.7.1, 2005.2.11></p> <p>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p> <p>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 ①특허청장은 조약규칙 20.3(b)(ii) 및 20.5(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i), 20.5(b) 또는 20.5(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p> <p>[본조신설 2010.7.27.]</p> <p>제114조의3(명백한 잘못의 정정에 대한 불인정) ①특허청장은 조약규칙 91.3(f)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약규칙 91.1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2010.7.27.]</p> <p>제116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에 있어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국제공개되지 아니하여 특허청장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특허청장에게 제출된 서류는 제외한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의 사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일까지 그 국제특</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사본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08.12.31.]</p> <p>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특허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 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2014.12.30.></p> <p>③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2014.1.29., 2014.4.10.></p> <p>④ 삭제 <2006.12.29.></p> <p>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⑦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⑧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p>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7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0.></p> <p>⑨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9.29., 2006.12.29., 2014.4.10.></p> <p>[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14.12.30.]</p> <p>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3.3.23></p> <p>[전문개정 1999.7.1] [제목개정 2007.6.29]</p> <p>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②제1항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6.30></p> <p>③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의 명칭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본조신설 2014.6.11]</p> <p>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 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p> <p>[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1.6.30.]</p> <p>제44조(조기공개 등의 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07.6.29, 2014.12.30></p> <p>②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1997.7.1, 1998.12.31, 2014.12.30></p> <p>③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6.12.29></p> <p>④대리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p> <p>[본조신설 1996.6.22] [제목개정 2003.5.17.]</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p> <p>⑤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p> <p>⑥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⑦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개정 1999.7.1, 2005.2.11></p> <p>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p> <p>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3.3.23> [전문개정 1999.7.1] [제목개정 2007.6.29]</p> <p>제112조(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국어번역문) 법 제201조제1항 또는 제214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4.12.30]</p> <p>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①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3.1.3]</p> <p>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25조제3항</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b) 또는 (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2.11]</p> <p>제113조의2(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b) 또는 (b-bis)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p> <p>②제25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3.12.31, 2005.2.11> [본조신설 1999.7.1]</p> <p>제114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201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2.28, 2003.5.17,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②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p> <p>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p> <p>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p>		<p>별지 제57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9.29, 2006.12.29, 2010.7.27, 2014.12.30></p> <p>④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 2010.7.27, 2014.12.30></p> <p>⑤법 제201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에 따른 수수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p> <p>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전문개정 1998.12.31.]</p> <p>[제목개정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p> <p>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약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p> <p>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p> <p>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 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p> <p>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p> <p>④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p> <p>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p> <p>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p> <p>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p> <p>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도면"</p> <p>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p> <p>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03조(서면의 제출)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p>②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p>④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p>		<p>제107조의2(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조약규칙 37.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출원의 번역문에는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명칭을 번역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본조신설 1997.7.1.]</p> <p>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규정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로 한다. <개정 2006.12.29></p> <p>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개정 1999.7.1., 2005.2.11.></p> <p>제114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201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 2002.2.28, 2003.5.17, 2006.12.29,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2010.7.27, 2014.12.30>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6.9.29, 2006.12.29, 2010.7.27, 2014.12.30> ④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 2010.7.27, 2014.12.30> ⑤법 제201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14.12.30.] 제5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원·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특허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 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2014.12.30.></p> <p>③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2014.1.29., 2014.4.10.></p> <p>④ 삭제 <2006.12.29.></p> <p>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⑦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⑧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7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4.4.10.></p> <p>⑨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 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p>②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p>		<p>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9.29., 2006.12.29., 2014.4.10.>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14.12.30.]</p> <p>제16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46조, 법 제141조 또는 법 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및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6.22, 1998.2.23, 1999.7.1, 2001.6.30, 2003.5.17, 2007.6.29, 2014.12.30></p> <p>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단축)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9></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p> <p>④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신설 1998.12.31></p> <p>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①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②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다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p> <p>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p>④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p>②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p> <p>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4.6.11]</p>		<p>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③ 삭제 <2002.2.28>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9.6.30]</p> <p>제115조(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①법 제204조제1항 및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서의 번역문 또는 보정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②법 제204조제3항에 따른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설명서의 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③ 삭제 <2002.2.28> [전문개정 1998.12.31] [제목개정 2009.6.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p> <p>②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p> <p>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p> <p>④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1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법 제20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4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8.9.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p>② 삭제 <2001.2.3></p> <p>③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개정 2014.6.11></p> <p>④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신설 2014.6.11></p> <p>⑤ 삭제 <2001.2.3> [제목개정 2014.6.11]</p> <p>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p>[전문개정 2014.6.11]</p> <p>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12조 삭제 <2006.3.3></p> <p>제213조 삭제 <2014.6.11></p> <p>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p>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p>		<p>제108조(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06.12.29></p> <p>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규정중 "특허출원서"는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로 한다. <개정 2006.12.29></p> <p>제109조(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법 제199조 또는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출원번호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수리한 때(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로 본다. <개정 1999.7.1, 2005.2.11></p> <p>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p> <p>⑤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⑥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 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02조제1항·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p> <p>⑦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출원의 특례) ①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p> <p>②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p> <p>[전문개정 2013.1.3]</p> <p>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①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p> <p>②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 각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p>[제목개정 2014.12.30]</p> <p>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2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8.12.31, 1999.7.1, 2008.9.30, 2013.3.23></p> <p>제119조(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보칙 <개정 2014.6.11></p> <p>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제3항,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그 특허출원의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9조의2(일부청구항의 포기) 법 제215조의2에 따라 청구항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특허료를 납부하는 때에 그 납부서와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2014.12.30> [본조신설 2001.6.30]</p> <p>제36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소유권기구에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송달(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4.12.30.>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목개정 2014.12.30.]</p> <p>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①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 신청·자료열람(복사)신청·서류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 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심판청구사실증명·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17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특허출원·심사·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특허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①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② 삭제 <2006.3.3> ③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p>		<p>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0]</p> <p>제120조의2(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5.2.11, 2006.9.29, 2008.9.30, 2013.3.23> 1. 특허출원증인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할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인 이상을 보유할 것 3. 임·직원중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삭제 <2006.9.29></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11></p> <p>④특허청장은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서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개정 2014.6.11></p> <p>⑤제4항에 따라 파일에 수록된 내용은 해당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1></p> <p>⑥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그 밖에 특허문서 전자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p> <p>⑦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11></p> <p>[본조신설 1997.4.10] [제목개정 2014.6.11]</p>		<p>②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2.11, 2006.9.29, 2008.9.30, 2010.7.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5. 삭제 <2006.9.29> <p>③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특허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④특허청장은 특허출원증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⑤특허청장은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2.11></p> <p>[본조신설 1997.7.1] [제목개정 2010.7.27]</p> <p>제120조의3(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특허문서전자화기관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3. 특허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p> <p>4. 기타 특허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삭제 <2005.2.11.> [본조신설 1997.7.1.]</p> <p>제120조의5(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217조의2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3.5.17,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2. 국제출원 관련서류(별지 제35호서식 내지 별지 제52호서식에 한한다) 3. 삭제 <2005.2.11> 4. 삭제 <2005.2.11> 5. 삭제 <2005.2.11> 6. 삭제 <2005.2.11> 7. 삭제 <2005.2.11> 8. 삭제 <2005.2.11> 9.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11.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12. 발급신청서(서류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에 한한다) <p>[전문개정 2002.2.28]</p> <p>제120조의6(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2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서 또는 보정서(명세서등의 내용보정에 한한다) 그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18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8조(서류의 송달등) ①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6.26., 2001.6.27., 2007.6.28.></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p>③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7.6.26., 1999.6.30., 2006.9.28., 2011.2.22.></p> <p>④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⑤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p> <p>⑥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1993.12.31., 2011.2.22.></p> <p>⑦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 <개정 1993.12.31.></p> <p>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p>	<p>30일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본조신설 199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19조(공시송달) ①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③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21조(특허공보) ①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특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p>	<p>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2.22.> ⑨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1.31., 2011.2.22.> ⑩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2011.2.22.> ⑪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2.> ⑫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1993.12.31., 2007.6.28., 2011.2.22.></p> <p>제19조(특허공보) ①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②등록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p>	<p>제120조의4(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21조제2항에 의한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1.6.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체로 발행할 수 있다.</p> <p>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09.6.26, 2013.6.28, 2014.12.30></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특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p> <p>나. 특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p> <p>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p> <p>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p> <p>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p> <p>5. 등록공고연월일</p> <p>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p> <p>6의2. 법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게재한다)</p> <p>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p> <p>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10. 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p> <p>11. 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p> <p>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6.30, 2001.6.27, 2003.6.13, 2006.9.28, 2013.6.28, 2014.12.30></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p> <p>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p> <p>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p> <p>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p> <p>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5.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199조</p>	<p>[본조신설 1997.7.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p> <p>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법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p> <p>5의3.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p> <p>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p> <p>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8.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9.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p> <p>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p> <p>④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p> <p>⑤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p>	<p>제14조(서류등의 제출) ①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건본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건본 그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3., 2002.2.28., 2006.12.29.></p> <p>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23조(특허표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물건에 특허표시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 3. 물건에 특허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 <p>[전문개정 2014.6.11]</p> <p>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p>[전문개정 2014.6.11]</p> <p>제224조의2(불복의 제한) ①보정각하결정, 특허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다.</p> <p>②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의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5조(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건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p> <p>제121조(특허표시)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표시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 "방법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p>②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p>③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⑤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24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③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p> <p>⑤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24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p> <p>제225조(침해죄) 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2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27조(위증죄) ①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p> <p>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p>[전문개정 2014.6.11]</p> <p>제231조(몰수 등) ①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08.9.30]</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207호, 1990.1.13.></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01조·제205조 및 제211조의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관한 사항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3조 (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 (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특허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발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에 우선권주장을 한 특허출원의 우선권발명서류의 제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특허권 및 특허출원되어 설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8조 (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특허권의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9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078호, 1990.8.28.></p> <p>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744호, 1992.10.27.></p> <p>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70호, 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8>생략 <119> 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0>내지 <188>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059호, 1993.12.31.></p> <p>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③(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50호, 1990.9.4.></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83호, 1992.10.30.></p> <p>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호, 1993.12.31.></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0호, 1996.6.22.></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③(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9호, 1997.7.1.></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공고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6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제5항, 제194조제4항,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및 제21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4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594호, 1993.12.10.></p> <p>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특허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757호, 1994.3.24.> (발명진흥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892호, 1995.1.5.></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009호, 1996.6.3.></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③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408호, 1997.6.26.></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2호 마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향고심판소에서 향고심판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이수한 기술심리관 및 심판관 양성연수과정의 이수기간은 각각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으로 재직 한 기간으로 본다. ②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특허청에서 심판관으로 재직 한 기간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으로 재직 한 기간으로 본다. ③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또는 향고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출원공고번호 제 호" 및 "출원공고일 년 월 일"을 각각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호, 1998.2.23.></p> <p>①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특허법 제135조 내지 동법 제137조"를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2조의4, 제135조 내지 제137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중 "제58조 내지 제69조"를 "제58조·제60조 내지 제69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호, 1998.12.31.></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경우의 보정)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분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단서 및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서류를 각 1통씩만 제출할 수 있다. ③(보정에 의한 플로피디스크의 제출) 이 규칙 시행전에 출원서류 부분을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자가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후에 특허사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설정특허료납부서 제출시까지 보정내용이 반영된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전체를 수록한 플로피디스크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개정 1997.4.10></p> <p>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p> <p>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4.10></p> <p>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동항중 "심판"은 "심판·항고심판·즉시항고"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417호, 1999.6.30.></p> <p>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725호, 2000.2.28.>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증개정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p> <p>④특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3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852호, 2000.6.23.></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246호, 2001.6.27.></p> <p>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학술단체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학술단체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5호, 1999.7.1.></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내지 제106조 및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제74조 내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된 국제출원·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②제106조의10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6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③제1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우선권서류사본의 도달공고를 하는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4호, 2000.10.25.></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5호중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7호, 2001.6.30.></p> <p>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6호, 2002.2.28.></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심사 및 심판사무"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080호, 1995.12.29.></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특허사정등본 송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중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기재한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전에 한 보정으로 본다.</p> <p>제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특허권 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중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①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실시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발명의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해 특허권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5년 1월 1일전에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의 만료일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장되는 존속기간동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995호, 2003.6.1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694호, 2005.1.31.></p> <p>이 영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5>생략 <216>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7>내지 <241>생략</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9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9조의2·제9조의8제2항·제120조의5 및 제12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p> <p>③(부분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4, 제46조제2항·제3항, 제60조 내지 제62조, 제68조, 제114조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특허출원·특허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2호, 2003.5.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호, 2003.12.31.></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국제출원의 계약국 지정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의3, 제106조의6제3항, 제106조의8, 제106조의11, 제106조의12, 제106조의14, 제106조의19, 제106조의20, 제106조의23, 제106조의45, 제113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하고, 제92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③(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4, 제106조의27, 제106조의29 내지 제106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④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5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329호, 1997.4.10.></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132조의3, 제140조의2, 제164조제1항, 제170조,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제2항, 제224조의2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①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로 본다.</p> <p>②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타심판의 심결이나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p> <p>③제1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 전단중 "제50조·제51조·제63조 및 제66조 내지 제75조"는 "제51조·제63조 및 제66조"로, 동항 후단은 삭제된 것으로 보고,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제51조제4항 내지 제6항"은 "제51조제1항·제5항"으로 본다.</p> <p>④제17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항중 "거절사정"은 각각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으로 본다.</p> <p>⑤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심사 또는 심판에서 밝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사·특</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697호, 2006.9.28.></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동조제3항제2호,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p> <p>③(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따른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④(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3항제7호·제9호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127호, 2007.6.28.></p> <p>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137호, 2007.6.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p> <p>⑪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5호, 2005.2.11.></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12, 제106조의15, 제106조의16, 제106조의38 및 제106조의39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25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국제조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 제106조의15 및 제106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분부터 적용한다.</p> <p>③(국제예비심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8 및 제106조의39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청구되는 국제예비심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6호, 2005.7.1.></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8호, 2005.9.1.></p> <p>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12호, 2005.11.30.></p> <p>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34호, 2006.4.28.></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허이의신청 또는 심판에서 밝은 특허에 관한 절차"로 본다.</p> <p>⑥제17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중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거절사정·취소결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파기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로 본다.</p> <p>제3조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으로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 및 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특허권·심판 또는 재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②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후에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p> <p>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p> <p>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p> <p>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29호, 2008.2.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53호, 2008.9.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67호, 2009.6.2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917호, 2009.12.30.></p>	<p>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67호, 2006.9.29.></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5조제2항·제9조제1항·제11조·제12조·제13조의2·제13조의4·제32조·제33조·제41조·제46조·제48조·제49조 및 제57조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별지 제5호의2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82호, 2006.12.29.></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특허출원심사·특허등록·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하여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특허이의신청 후의 답변·보정·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임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의장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은 "제68조 및 동법 제78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장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의장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576호, 1998.9.23.></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3조제1항·제198조의 2, 제201조제6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개정규정, 제20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10조의 개정규정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1조·제29조·제36조·제49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제69조·제87조·제88조·제102조·제104조·제133조·제202조·제209조 및 제21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제1항중 의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출원 및 동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등록, 특허권, 특허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2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중 특허출원 관련절차 및 특허이의신청 관련절차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674호, 2011.2.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341호, 2011.1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88호, 2012.1.6.></p> <p>(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39호, 2013.3.2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특허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10.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 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11. 서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 12. 특허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13. 특허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02호, 2007.6.29.></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특허출원심사·특허등록·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35호, 2007.12.11.> (특허등록령 시행규칙)</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개정 2002.12.11> 제4조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특허출원한 발명(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발명"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발명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를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89조중 "특허법 제231조"를 "특허법 제229조의2 및 동법 제231조"로 한다. ②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024호,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411호, 2001.2.3.></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 제84조제2항·제3항,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91호, 2013.4.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발명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645호, 2013.6.28.></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특허출원 2.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다목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특허출원 가. 법 제34조 본문 및 제35조 본문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나. 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 다. 법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의3의 개정규</p>	<p>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허권자 11.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2. 질권자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구분]란 중 "□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으로 하고, 뒤쪽의 1. 구분 및 관련규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분 및 관련 규정</p> <table border="1" data-bbox="1467 598 2110 1165">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관련규정</th> </tr> </thead> <tbody> <tr> <td>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td> <td>-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은 자가 성명·주소·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 등록명의인의 주소·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td> <td>「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td> </tr> <tr> <td>출원인코드 정정</td> <td>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td> <td>「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td> </tr> </tbody> </table> <p>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중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에는 "출원인", "심사청구인", "등록명의인" 등으로, 출원인코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후 출원인"으로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구분	내용	관련규정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은 자가 성명·주소·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 등록명의인의 주소·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	출원인코드 정정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구분	내용	관련규정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은 자가 성명·주소·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 등록명의인의 주소·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실용신안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									
출원인코드 정정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동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②(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9항 및 제140조제2항을 적용한다. 2. 특허료의 추가납부에 의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한에 있어서는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36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과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5.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포기함에 있어서는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582호, 2001.12.3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학교 교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직무발명 당시 학교의 전담조직에 이전한다.</p> <p>③(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립학교 교직원들의 직무고안 및 직무창작에 대한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장권 및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는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3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p>	<p>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특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고용특허공보 또는 공개용특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을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48>부터 <50>까지 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924호, 2014.12.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등록특허공보 게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등록특허공보에 게재하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조사·분류 전문기관으로 본다.</p> <p>제4조(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 기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미생물</p>	<p>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5호가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변경(경정, 정정)원인]란 [변경(경정, 정정)원인]란에는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경정)하는 이유 또는 출원인코드를 정정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7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원인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의 경우 :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중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라.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정정 신고의 서식 중 출원인 코드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은 출원인코드의 정보 변경(경정)과 함께 2008. 1. 1. 이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변경(경정)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출원인이 같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인코드의 정보와 등록명의인이 같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는 일괄하여 변경(경정)됩니다.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의 표시를 일괄하여 변경(경정)하려면 최초 신청시에는 이 서식 대신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을 사용하고, 그 이후의 신청시에는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4호, 2008.9.30.></p> <p>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1호,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민사소송법 제9조"를 "민사소송법 제11조"로 한다. 제154조제7항중 "민사소송법 제142조·제143조 및 동법 제145조 내지 제149조"를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동법 제156조 내지 제160조"로 하고, 동조제8항중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제16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89조 내지 제94조·제98조제1항 및 제2항·제99조·제101조·제102조 및 동법 제106조"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93조"를 "민사소송법 제102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185조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민사소송법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32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24>내지 <29>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768호, 2002.12.1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p>	<p>기탁기관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본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28조,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4조제8항제1호, 제93조의2제1항제1호,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의2, 제103조, 제106조의6, 제116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3항, 제34조, 제78조제1항·제2항, 제81조,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7, 제106조의24제3항 및 제106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허출원·특허출원심사·특허등록·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국제출원의 사용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제3호, 제106조의19, 제106조의23, 제106조의24제2항, 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제106조의40 및 제106조의41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5조(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의2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2007년 4월 1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조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7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8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5호, 2009.6.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특허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p> <p>③(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p> <p>⑧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5조제3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p> <p>제98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p> <p>제102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p> <p>제105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p> <p>제132조의2제1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p> <p>제138조제4항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p> <p>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p> <p>제191조제3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p> <p>⑨내지 <16>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27호, 2005.3.31.> (민법)</p>		<p>106조의11제5항 및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93조제2항, 제112조,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특허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심판청구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 및 제112조, 별지 제43호부터 별지 제46호까지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출원 및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7호, 2009.12.29.></p> <p>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7호, 2010.7.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제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및 제106조의4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국제출원의 보정서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내지 <29>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554호, 2005.5.31.></p> <p>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869호, 2006.3.3.> (발명진흥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871호, 2006.3.3.></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6조, 제7조의2, 제11조제1항, 제20조제7호, 제21조제6호,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31조, 제36조제3항,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항·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56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제3항, 제62조, 제63조의2, 제64조, 제87조제2항, 제88조제4항, 제1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 관</p>		<p>제18조 본문 중 "제9조의3부터 제9조의8까지"를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로 한다.</p> <p>②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포괄위임등록신청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로, "포괄위임등록 신청(철회)서"를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로 한다. 제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1호, 2011.2.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89호, 2011.6.23.></p> <p>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0호, 2011.9.28.></p> <p>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2호, 2011.12.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런 개정부분, 제104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3조의2제4항, 제135조제1항, 제154조제8항, 제193조제1항, 제202조제3항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4항, 제204조 및 제205조중 기준일 관련 개정부분, 제208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 제215조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항, 제4조, 제15조제1항, 제35조, 제55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57조제1항, 제65조제6항, 제69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2, 제84조제1항, 제132조의3, 제136조제1항·제6항, 제137조제1항, 제140조의2, 제148조, 제164조제1항, 제165조제3항·제4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171조제2항, 제172조, 제176조제1항·제2항, 제181조제1항, 제212조, 제214조제5항, 제215조, 제217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동조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2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4조의2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6조제2항, 제2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취소결정,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 대리한 것부터 적용한다.</p> <p>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8호, 2012.6.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 제88조의2, 제106조의6제3항·제4항,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간 미준수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약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조(국제조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제5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4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전자서명 및 온라인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1호, 2013.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7조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171호, 2007.1.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197호, 2007.1.3.></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47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2조제4호,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제170조제1항 후단 및 제17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하는 최초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 및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6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시행한다.</p> <p>제2조(포괄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5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112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국제출원 출원서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원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호, 2013.3.2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제118조 및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및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사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호, 2013.6.28.></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 및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357호, 2007.4.11.> (발명진흥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462호, 2007.5.17.></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특허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p>		<p>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 개정규정 중 상표 절차(의견서 제출) 계속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7호, 2014.1.29.> (변리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2조제4호, 제48조제2항제4호, 제54조제6호, 제54조의4제6호, 제67조제3호 및 제106조의16제4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호, 2014.4.1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특허출원의 심사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심사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1호, 2014.6.27.></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본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6> 까지 생략 <747>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제6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p> <p>제42조제3항, 제58조의2제3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193조제1항, 제215조의2제2항 및 제217조의2제7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p> <p><747>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249호, 2008.12.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381호, 2009.1.3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55조,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81조의3, 제90조제6항, 제140조, 제140조의2제2항, 제202조, 제204조, 제20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4조, 제216조, 제226조, 제226조의2 및 제227조부터 제2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제204조, 제205조 및 제20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특허출원부</p>		<p>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3호, 2014.12.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9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보정의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0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의 보정기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터 적용한다.</p> <p>제3조(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51조제1항 본문 및 제55조의 개정규정 중 제47조제4항 삭제 관련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을 "기간"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를 "제132조의3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로 보고,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본다.</p> <p>제4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제51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5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한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7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81조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료를 납부·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8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9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 및 제1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15조제1항 및 제216조는 제외한다)에 따른다.</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9조 중 "「특허법」 제229조의2"를 "「특허법」 제226조의2"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985호, 2010.1.27.></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716호, 2011.5.24.></p> <p>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제63조의2 및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117호, 2011.1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제93조, 제132조의3, 제134조,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p> <p>제5조(특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특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54호, 2013.3.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52조제4항, 제53조제6항, 제58조의2제2항, 제59조제3항,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절차의 무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4항, 제67조의3, 제81조의3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6조(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9>까지 생략 <46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4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의2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의2제1항·제4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1>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48호, 2013.5.28.> (디자인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52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5조 및 제10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2조제4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70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23조"로 한다. 제105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8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p> <p>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62호, 2013.7.30.> (변리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제90조제1항제2호, 제92조의3제1항제2호, 제140조제1항제1호의2, 제140조의2제1항제1호의2, 제162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03조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313호, 2014.1.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지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지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753호, 2014.6.1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적용한다.</p> <p>제5조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p> <p>제6조 (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p> <p>제7조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제3항에 따른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이 기재된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5조제6항 및 제20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9조제4항, 제55조제6항, 제2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p> <p>제10조 (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5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1조제1항 중 "제6조(특허출원의 변경·취하, 청구의 취하, 심판청구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를 "제6조 [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로,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 제6조"를 "「특허법」 제6조제7호"로, "「특허법」 제17조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제180조제1항"을 "</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법률 제12753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특 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3호, 2014.12.30., 일부개정]</p>
<p>「특허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3"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제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소송""을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p> <p>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096호, 2015.1.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①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p>②제5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 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p>		

실용신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대비표

목 차

제 1 장	총칙	237
제 2 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39
제 3 장	심사	247
제 4 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53
제 5 장	실용신안권	255
제 6 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68
제 7 장	심판 · 재심 및 소송	268
제 8 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73
제 9 장	보칙	279
제 10 장	벌칙	283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6.11] <p>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4조의2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5.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6.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관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p> <p>7.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신청·보정·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p> <p>[본조신설 2011.12.2.]</p> <p>제2조(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건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건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p> <p>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p>②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③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p>④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 		<p>제4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p> <p>②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3.1.3.]</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거나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p> <p>⑤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p> <p>⑥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은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 「특허법」"으로 본다.</p> <p>⑦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고안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p>②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삭제 2015.1.28., 시행 2015. 7. 29.]</p> <p>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p>[전문개정 2014.6.11]</p> <p>제7조(선출원)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②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③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p> <p>④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p>⑤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⑥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p>②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p>③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p>④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p>⑤ 삭제 <2014.6.11></p> <p>⑥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p> <p>⑦ 삭제 <2014.6.11></p> <p>⑧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p>	<p>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13.6.28, 2014.12.30></p> <p>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p> <p>③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p> <p>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p> <p>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0.]</p> <p>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p> <p>②「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p>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p> <p>③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안의 명칭 2. 기술분야 3.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안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고안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p> <p>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⑨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p>		<p>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6조(미생물의 분양절차)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2.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목개정 2014.12.30.]</p> <p>제7조(고안자의 추가 등)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 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8.12.31.></p> <p>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08.12.31.,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8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고안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p> <p>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p> <p>③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4.6.11]</p> <p>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p> <p>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p>		<p>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p> <p>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①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p> <p>②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12.30]</p> <p>제3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①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p>④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p> <p>⑤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⑥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4.6.11]</p> <p>제9조(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고안마다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p> <p>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고안에 대하여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③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0조(변경출원) ①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p> <p>1.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p> <p>2. 그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p> <p>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p> <p>1.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4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p> <p>2. 제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p> <p>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 2015.1.28. 시행 2015. 7. 29.></p> <p>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p> <p>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p> <p>③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p> <p>④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1></p> <p>⑤ 삭제 <2014.6.11></p> <p>⑥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p>		<p>제8조(변경출원)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p>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p> <p>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p> <p>제9조(심사의 순위) ①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p> <p>가.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p> <p>나.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후 그 변경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p> <p>2. 특허청장이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p> <p>⑦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4.6.11></p> <p>⑧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11></p> <p>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p> <p>제11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8., 시행 2015. 7. 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심사</p> <p>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p>		<p>제9조(심사의 순위) ①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p> <p>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p> <p>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p> <p>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p> <p>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가.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p> <p>나.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후 그 변경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p> <p>2. 특허청장이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p> <p>제10조의3(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p> <p>1.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p> <p>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p> <p>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p>[전문개정 2014.6.11]</p> <p>제14조(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p>④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8.9.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5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9.1.30]</p>	<p>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7.6.29, 2008.9.30, 2013.6.28,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의2.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10.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11.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1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 	<p>제9조(심사의 순위) ①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한 후 그 분할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 나.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후 그 변경출원을 심사청구한 경우 2. 특허청장이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 <p>제10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①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p> <p>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p> <p>제7조(실용신안공보)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p> <p>②등록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9.6.26, 2013.6.28,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실용신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실용신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p>5의2. 법 제5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게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10.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 	<p>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서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p> <p>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7.6.29.]</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권보정에 관한 사항</p> <p>1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동법 제136조 또는 동법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p> <p>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p> <p>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p> <p>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p> <p>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p> <p>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p> <p>5.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p> <p>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p> <p>6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p> <p>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p> <p>제16조(등록료) ①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내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7조(수수료)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p> <p>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p> <p>④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p> <p>⑤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p>②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 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②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p> <p>③특허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④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실용신안권</p> <p>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p>③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주소 및 실용신안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실</p>	<p>제7조(실용신안공보)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②등록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9.6.26, 2013.6.28,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실용신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실용신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p>5의2. 법 제5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게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 <p>[제목개정 2014.12.30.]</p> <p>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⑤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동안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8.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p> <p>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10.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p> <p>1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동법 제136조 또는 동법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p> <p>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p> <p>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p> <p>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p> <p>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p> <p>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p> <p>5.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p> <p>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p> <p>6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p> <p>②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p> <p>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p> <p>④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p> <p>⑤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p> <p>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p>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의 개입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개입된 날까지의 기간</p> <p>나.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또는</p>	<p>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p>1. 그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p> <p>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③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제35조·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p>[본조신설 2011.12.2]</p>	<p>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다.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p> <p>라.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p> <p>마. 법 제3조, 제15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p> <p>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사. 법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p> <p>아. 법 제11조, 제3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본조신설 2011.12.2.]</p> <p>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1.12.2.]</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자.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p> <p>차.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준용되는 경우에는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카.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p> <p>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p> <p>파.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본문에 따른 제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p> <p>하.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p> <p>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p> <p>너.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p> <p>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에 따른 제심을 그 제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제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제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p> <p>러.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p> <p>머.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p> <p>2.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78조제2항 또는</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p> <p>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p> <p>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p> <p>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p> <p>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p> <p>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p> <p>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p> <p>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p> <p>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p> <p>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p> <p>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p> <p>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p> <p>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의 기간</p> <p>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p> <p>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p> <p>3.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p> <p>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p> <p>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p> <p>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p>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p> <p>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하는 기간</p> <p>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4.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p> <p>[본조신설 2011.12.2]</p>	<p>제13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연장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2011.12.2]</p> <p>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5.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p> <p>③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p> <p>④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p> <p>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 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p>		<p>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 <p>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실용신안등록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11.12.2.] <p>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예외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p>[본조신설 2011.12.2]</p> <p>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p>[본조신설 2011.12.2]</p> <p>제22조의6(준용규정)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 「특허법」 제57조제1항·제67조·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1.12.2]</p> <p>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p>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고안에 대한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중 그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 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7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p>②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p>③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1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②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p> <p>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p> <p>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p> <p>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p>		<p>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p> <p>③특허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④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 <p>[제목개정 2014.12.30]</p> <p>제14조(심판청구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법 제31조 내지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제135조 내지</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p>②제1항에 따른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p> <p>③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④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p>		<p>제137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p>②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③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1.12.2]</p> <p>제32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실용신안권자, 특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 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3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09.1.30]</p>		<p>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③특허청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 후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p> <p>④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p>[제목개정 2014.12.30]</p> <p>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4조의2제4호에서</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3.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4.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5.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6.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관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p> <p>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p> <p>7.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신청·보정·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본조신설 2011.12.2]</p> <p>제14조(심판청구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법 제31조 내지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34조의2(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p> <p>②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p> <p>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p>[본조신설 2014.6.11]</p> <p>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p>		<p>②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제87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2.6.28, 2013.6.28></p> <p>③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의2, 제114조의3,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7.27></p> <p>제15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p> <p>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p> <p>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p> <p>⑤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p> <p>⑥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p>		<p>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p> <p>②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p> <p>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③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 2014.12.30></p> <p>④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7, 2014.12.30></p> <p>⑤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p> <p>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제목개정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⑦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36조(도면의 제출)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p> <p>④출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37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6.1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p>[전문개정 2014.6.11]</p> <p>제39조 삭제 <2014.6.11></p> <p>제40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p>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p>		<p>제17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 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p> <p>⑤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⑥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p> <p>⑦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4.6.11]</p> <p>제41조(「특허법」의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4.6.11]</p>		<p>2010.7.27, 2014.12.30></p> <p>②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제87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2.6.28, 2013.6.28></p> <p>③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의2, 제114조의3,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7.27></p> <p>제15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p>②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보칙</p> <p>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7조(실용신안공보)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②등록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9.6.26, 2013.6.28,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실용신안권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실용신안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p>5의2. 법 제5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③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 2014.12.30></p> <p>④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7, 2014.12.30></p> <p>⑤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목개정 2014.12.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고안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게재한다)</p> <p>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p> <p>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8.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를 말한다)</p> <p>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10.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p> <p>11.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동법 제 136조 또는 동법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p> <p>12.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p> <p>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p> <p>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p> <p>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p> <p>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p> <p>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p> <p>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p> <p>5.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p> <p>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p> <p>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p>	<p>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p> <p>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p> <p>6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p> <p>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p> <p>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p> <p>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p> <p>④특허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p> <p>⑤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p> <p>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p> <p>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3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4조의2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p>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2.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p> <p>3.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4.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5.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p> <p>6.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관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p> <p>7. 그 밖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결정·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신청·보정·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p> <p>[본조신설 2011.12.2]</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벌칙</p> <p>제45조(침해죄) ①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7조(위증죄) ①제33조 및 「특허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4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p>		<p>제16조(실용신안등록표시)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때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표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p> <p>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p>[전문개정 2014.6.11]</p> <p>제51조(물수 등) ①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물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5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품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6.11]</p>	<p>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전문개정 2008.9.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872호, 2006.3.3.></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4항 단서, 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p>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p> <p>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2항 본문 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193호, 2007.1.3.></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696호, 2006.9.28.></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p> <p>③(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128호, 2007.6.28.></p> <p>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137호, 2007.6.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p> <p>⑩부터 ⑫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68호, 2006.9.29.></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83호, 2006.12.29.></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실용신안등록·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된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6년 10월 1일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의 기술평가와 관련된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의견제출·보정·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5> 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234호, 2008.12.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729호, 2008.2.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054호, 2008.9.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1568호, 2009.6.26.></p> <p>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342호, 2011.1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p>	<p>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p> <p>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p> <p>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p> <p>9. 실용신안권자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p> <p>10. 서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p> <p>11.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p> <p>12.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p> <p>13.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p> <p>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후의 답변·보정·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371호, 2009.1.30.></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502호, 2011.3.30.></p> <p>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114호, 2011.12.2.></p>	<p>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도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3488호, 2012.1.6.></p> <p>(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439호, 2013.3.23.></p> <p>(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p> <p>⑧ 및 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4646호, 2013.6.28.></p>	<p>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p> <p>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p> <p>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p> <p>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p> <p>10. 실용신안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p> <p>11. 서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p> <p>12.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p> <p>13.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p> <p>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03호, 2007.6.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1. 이 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p> <p>2.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가목의 경우에는</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5호, 2008.9.30.></p> <p>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2호, 2008.12.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적용한다.</p> <p>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53호, 2013.3.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8>까지 생략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p>	<p>특허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실용신안등록출원</p> <p>가.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p> <p>나. 법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p> <p>다. 법 제11조에 따른 분할출원</p> <p>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실용신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개용실용신안공보 또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925호, 2014.12.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등록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및 제100조의2 관련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관련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다.</p> <p>제5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호, 2009.6.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호, 2010.7.27.></p> <p>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72호, 2011.2.25.></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으로 한다. <460>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848호, 2013.5.28.> (디자인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생략</p> <p>제20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962호, 2013.7.30.> (변리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2752호, 2014.6.1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90호, 2011.6.23.></p> <p>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1호, 2011.9.28.></p> <p>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23호, 2011.12.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9호, 2012.6.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에 관</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개정법률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등록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실용신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용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p> <p>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p> <p>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9조(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고안이 기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p>		<p>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2호, 2013.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3호, 2013.3.2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p> <p>⑤ 및 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4호, 2013.6.28.></p> <p>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47호, 2014.1.29.></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12752호, 2014.6.11.,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5925호, 2014.12.3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 2014.12.30., 일부개정]</p>
<p>조제4항에 따른다.</p> <p>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088호, 2015.1.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변리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4제6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p> <p>④ 및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04호, 2014.12.30.></p> <p>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실용신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대비표(2006. 9. 30. 이전 시행)

목 차

제 1 장	총칙	295
제 2 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99
제 3 장	실용신안 기술평가	312
제 4 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등	316
제 5 장	실용신안권	320
제 6 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323
제 7 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324
제 8 장	심판·재심 및 소송	326
제 9 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332
제 10 장	보칙	341
제 11 장	벌칙	342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p>제3조(절차의 무효)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p> <p>제3조의2(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실용신안권의 포기, 제54조·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01.2.3]</p> <p>제3조의3(복수당사자의 대표) ①2인 이상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개정 2005.2.1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4.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1.2.3] 제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동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조중 "출원심사의 청구인"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인"으로 본다. <개정 2001.2.3> [적용: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p>		<p>제2조(출원인코드의 부여등) ①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인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인 4. 실용신안등록 이의답변인 5. 정정청구인 6. 실용신안권자(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인 8. 등록공고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정보제출인 9.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p>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p> <p>③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감·전화번호등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인정보변경(정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5.2.11></p> <p>④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제3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12.31,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실용신안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특허협력조약」제2조(vii)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관련서류(「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의2서식, 별지 제61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5호(2)서식, 별지 제65호의2(2)서식, 별지 제65호의4(2)서식, 별지 제65호의6(2)서식, 별지 제65호의8(2)서식, 별지 제65호의11(2)서식, 별지 제65호의13(2)서식, 별지 제65호의15(2)서식, 별지 제65호의17(2)서식, 별지 제65호의19(2)서식, 별지 제65호의21(2)서식, 별지 제65호의23(2)서식, 별지 제65호의25(2)서식, 별지 제65호의27(2)서식, 별지 제65호의29(2)서식, 별지 제65호의31(2)서식 및 별지 제65호의39서식에 한한다) 6.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7.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8. 삭제 <2003.5.17> ② 삭제 <2002.2.2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에 해당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 또는 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8, 2005.2.11></p> <p>제5조(서류의 원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때에 있어서의 제출서류는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이 규칙 제2조,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그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11></p> <p>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법 제6조제2항,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이 규칙 제2조,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p> <p>제5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 <p>②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1.2.3></p>	<p>제1조의2(전기통신회선)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p>②법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학교 또는 외국의 	<p>안에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p> <p>제14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11조, 법 제12조,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p> <p>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1></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개정 2005.2.1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③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등록공고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이나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의 출원인과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p> <p>1. 삭제 <2001.2.3> 2. 삭제 <2001.2.3></p> <p>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이나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p> <p>제6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개정 2001.2.3>)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고안은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p> <p>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사립대학</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술단체</p> <p>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술단체</p> <p>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p> <p>다.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p> <p>[본조신설 2001.6.2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가. 시험</p> <p>나. 간행물예외의 발표</p> <p>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p> <p>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p> <p>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박람회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가. 삭제 <2001.2.3></p> <p>나. 삭제 <2001.2.3></p> <p>다. 삭제 <2001.2.3></p> <p>라. 삭제 <2001.2.3></p> <p>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p> <p>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p> <p>제8조(선출원<개정 2001.2.3>)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p> <p>②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③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특허출원인보다 먼저 출원한 경</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우에 한하여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p> <p>④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만 권리설정등록을 받기로 특허출원인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p> <p>⑤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p> <p>⑥고안자 또는 발명자외의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행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제9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6. 삭제 <2001.2.3>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p>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p> <p>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2003.6.13></p> <p>③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p> <p>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p>	<p>제6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개정 2001.6.30>)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1></p> <p>제7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력<개정 2001.6.30>)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심판에 관한 서류 또는 견본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법한 실용신안등록출원·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3. 고안의 상세한 설명</p> <p>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p> <p>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p>⑤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다. <개정 2003.6.13></p> <p>⑥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p> <p>⑦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p>	<p><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출원서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법 제54조 또는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p>10의2. 삭제 <2003.5.17></p> <p>10의3. 삭제 <2003.5.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당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동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동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 동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명확하지 아니하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제10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고안에 대하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p>	<p>제3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청구된 고안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p>	<p>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p> <p>13. 온라인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p> <p>13의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p> <p>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들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2.11></p> <p>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들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의2 또는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 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p>[전문개정 2003.6.13]</p>	<p>제8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또는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18조제3항 또는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5.7.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서류 1통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14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11조, 법 제12조,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p> <p>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1></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개정 2005.2.1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제12조(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p>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p>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1.2.3]</p>		<p>제8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또는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18조제3항 또는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5.7.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서류 1통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14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11조, 법 제12조,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p> <p>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1></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개정 2005.2.1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제13조(실용신안등록출원등의 보정)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는 그 사건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보정할 수 없다.<개정 2001.2.3></p> <p>②삭제<2001.2.3></p> <p>제14조(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2.3]</p> <p>제15조(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개정 2001.2.3>) ①삭제<개정 2001.2.3></p> <p>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이중출원은 그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p> <p>제16조(분할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2이상의 고안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1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2001.2.3></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부터 분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p>		<p>제8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또는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18조제3항 또는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5.7.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서류 1통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할출원이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제5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p> <p>④분할출원에 있어서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제17조(이중출원) ①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이중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을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 1. 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있어서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하여 그가 당해 출원일전에 행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에 한하며, 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 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라.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 3.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선출원이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4.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선출원에 대한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5. 선출원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 </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중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6조 제1항·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제38조제3호·제39조·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36조제4항,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 특허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중 당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등록공고된 때에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선출원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5조제4항중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p> <p>제19조(선출원의 취하등)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기·취하·무효 또는 각하된 경우 2.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경우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p>②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p> <p>③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제20조(특허법의 준용) ①특허법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②특허법 제3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는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7조제1항제2호중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본다.</p> <p>③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항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35</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의 자"로, "최선일부 터 1년 4월 이내"는 "최선일부 터 1년 4월 이내로서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실용신안 기술평가</p> <p>제21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①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 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 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실용신안권의 소멸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되거나 이 법 제4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후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3 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 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추가로 1 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2.3></p> <p>⑤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실용신안기술평가) ①특허청장은 제2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등록 실용신안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특허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은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23조(청구사실의 공보게재)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공고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시에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공고후에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기 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p>	<p>제4조(기술평가의 청구방법)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술평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의 소재지) 2. 삭제 <2001.6.27> 3. 기술평가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실용신안의 표시 4. 삭제 <2001.6.27>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4조(선행기술의 조사 등<개정 2001.2.3>)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1.2.3></p> <p>②특허법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료조사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2.3></p> <p>제25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이 법 제5조·제7조·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실용신안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항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p>②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p> <p>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하</p>		<p>제13조(의견서) 법 제25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51조제4항(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 및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법 제51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14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11조, 법 제12조,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p> <p>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1></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기술평가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p> <p>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01.2.3></p> <p>제26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①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제27조(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개정 2001.2.3>)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p>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술평가청구인에게 정정청구서의 부분을 송부하여야 한다.</p> <p>④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1.2.3></p> <p>⑤특허청장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p>		<p>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개정 2005.2.11></p> <p>제15조(정정청구서)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1항, 법 제49조의2제1항 및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p> <p>[전문개정 2001.6.30]</p> <p>제8조의2(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명세서등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정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보정신청서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5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51조제6항,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2001.6.30]</p> <p>제13조(의견서) 법 제25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51조제4항(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 및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법 제51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제28조(기술평가절차의 중지등) ①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기술평가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1.2.3></p> <p>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제28조의2(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42조,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p> <p>[본조신설 2001.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등</p> <p>제29조(등록료)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중 최초 1년분의 등록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의2(등록료의 추가납부 등<개정 2002.12.11>)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본조신설 2001.2.3]</p> <p>제29조의3(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제29조제3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료의 보전(보전)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료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02.12.11]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02.12.11>]</p> <p>제29조의4(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①실용신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료 납부기간이</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p> <p>③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용신안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p> <p>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실용신안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2005.5.31></p> <p>⑤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5.5.31></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p> <p>[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3에서 이동 <2002.12.11>]</p> <p>제30조(수수료)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등록료 등의 반환) 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1.2.3, 2002.12.1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p> <p>2. 제25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p> <p>3.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출원에 대하여 납부된 등록료</p> <p>4.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된 출원에 대하여 납부된 등록료</p> <p>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p> <p>③제1항제1호의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료의 반환은 무효처분·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1.2.3></p> <p>제32조(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2.12.11></p> <p>1. 실용신안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p> <p>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p> <p>3.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p> <p>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데이터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p> <p>③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p> <p>④실용신안등록원부의 등록절차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을 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특허청장은 제51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3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실용신안권</p> <p>제35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광고) ①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p> <p>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 각호의 1 또는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증출원에 있어서 당해 이증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2. 실용신안권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증출원(이하 이 호에서 "이증특허출원"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이증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p>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④특허청장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3항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p> <p>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⑥제3항의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p>	<p>제5조(실용신안공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2003.6.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이증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사항 9.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10. 법 제27조 및 법 제4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77조, 법 제49조의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내용 10의2. 당해 고안의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2.3></p> <p>1. 삭제<2001.2.3></p> <p>2. 삭제<2001.2.3></p> <p>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2.3></p> <p>②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등록된 경우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p> <p>③삭제<2001.2.3></p> <p>④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종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2.3></p> <p>제37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8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p> <p>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p> <p>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p> <p>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p> <p>제39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이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한 것이거나 당해 실용신안권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p> <p>제40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고안에 대한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4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개정 2004.12.31>)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p> <p>②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가진 자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통상실시권에 한한다)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4.12.31></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42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97조·제99조 내지 제103조·제106조 내지 제116조·제118조 내지 제125조 및 제125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p> <p>제43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p> <p>제44조(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개정 2001.2.3>)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01.2.3></p> <p>제45조(실용신안권자등의 책임) ①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등에 대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4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을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은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정정됨으로써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고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46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30조·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0조중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로 본다.<개정 2001.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p> <p>제47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①실용신안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이 법 제5조·제7조·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4.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이의 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실용신안등록의 표시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p>③제49조제4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48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70조 내지 제7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77조제3항 전단중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3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으로 보며, 동법 제78조제1항중 "특허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본다.<개정 2001.2.3></p>		<p>제8조의2(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명세서등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보정신청서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심판·재심 및 소송</p> <p>제4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p> <p>1.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이 법 제5조·제7조·제8조</p>		<p>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p> <p>3. 법 제5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p> <p>4.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51조제6항,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본조신설 2001.6.30]</p> <p>제13조(의견서) 법 제25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51조제4항(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 및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법 제51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p>제8조의2(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명세서등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제1항 내지 제4항·제9조제3항·제4항 또는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p> <p>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p> <p>3. 조약에 위반된 경우</p> <p>4. 실용신안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p> <p>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p> <p>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정 2005.2.11></p> <p>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p> <p>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보정신청서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p> <p>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p> <p>2.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p> <p>3. 법 제5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p> <p>4.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p> <p>1. 삭제 <2002.2.28></p> <p>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p> <p>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p> <p>4.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51조제6항,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p> <p>[본조신설 2001.6.30]</p> <p>제20조(심판청구서)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49조 내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p> <p>②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제49조의2(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 정)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p> <p>③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9항중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한하여"로 본다.</p> <p>[본조신설 2001.2.3]</p> <p>제50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p> <p>제51조(정정심판)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기술평가·실용신안등록의 의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p>		<p>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p> <p>제15조(정정청구서)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p>②「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1항, 법 제49조의2제1항 및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p> <p>[전문개정 2001.6.30]</p> <p>제13조(의견서) 법 제25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51조제4항(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 및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법 제51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 등록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1.2.3> ④심판관은 제1항의 심판청구가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⑤제1항의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 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실용신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9조제1항, 이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0조제4항 및 동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⑦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⑧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가 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⑩특허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 </p>		<p>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p> <p>제52조(정정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7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7조제2항 각호의 1 2. 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제4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7조제4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중 동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1 <p>②제4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p> <p>④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의2제3항중 "제49조제1항"은 "제52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제53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이 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허락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허락요청을 받은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의 허여를</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할 수 있다. <개정 2001.2.3></p> <p>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실시를 필요로 하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여를 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p> <p>⑤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p> <p>제54조(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제25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p> <p>제54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1.2.3]</p> <p>제55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p> <p>3. 심판사건의 표시</p> <p>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p> <p>③제53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p> <p>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실용신안등록의 번호 및 명칭</p> <p>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p> <p>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p> <p>④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p> <p>⑤제51조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p> <p>제56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제140조의2제2항·제141조 내지 제166조·제171조제2항·제172조·제176조 및 동법 제178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2항중 "특허이의신청인"은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인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으로, 제164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제172조중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은 "심사·실용신안기술평가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으로 각각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p> <p>제57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58조(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제59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6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p> <p>②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3조 (2) 또는 제40조 (2)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국내처리의 청구"라 한다)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국내처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p>		<p>제23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등의 번역문) 법 제59조제1항 또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의4서식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요약서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p> <p>제22조(번역문등의 제출) ①법 제59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번역문등의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어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3.5.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②법 제5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처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처리청구서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법 제61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8호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5.2.11, 2005.7.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출원서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p> <p>⑥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적용:제59조제6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p> <p>⑦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⑧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p> <p>제60조(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이 서류들의 출원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으로, "등록공고"는 "등록공고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본다.</p> <p>③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59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p>		<p>④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보고, 동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59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보며, 제19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59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또는 제59조제1항이나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p> <p>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보고, 제18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보며, 제19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때"는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3월을 경과한 때 또는 제71조제4항이나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을 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p> <p>제61조(서면의 제출)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p> <p>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p>		<p>제14조(기간의 지정) ①법 제11조, 법 제12조,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p> <p>3. 삭제 <2001.2.3></p> <p>4. 고안의 명칭</p> <p>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p> <p>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p> <p>②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p> <p>1.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p> <p>제62조(도면의 제출)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3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청구의 범위에</p>		<p>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p> <p>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1></p> <p>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개정 2005.2.1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국어번역문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p> <p>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를 동조약 제2조 (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2항의 보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4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 (2)(b)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p> <p>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34조 (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65조(보정의 특례)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63조 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하고 기준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p> <p>[적용:제65조제1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p> <p>②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28조 (1) 또는 동조약 제41조 (1)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제14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 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p> <p>제66조(이중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p> <p>제67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의에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p>[전문개정 2002.12.11]</p> <p>제68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p>[전문개정 2002.12.11]</p> <p>제69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하여 제2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중 "누구든지"는 "기준일을 경과한 후에는 누구든지"로 본다.</p> <p>제70조(등록료납부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 1년분 등록료의 납부에 대해서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증출원의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증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서면제출기간내(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처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내처리의 청구시까지)"로 본다.</p> <p>제71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이 동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 (1)(a) 또는 (b)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의 인정거부 또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보는 취지의 선언이 행하여지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 (1)(a)의 규정에 의한 기록원본 불수리의 인정이 행하여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동조 (2)(a)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서에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등의 번역문) 법 제59조제1항 또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의4서식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요약서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p> <p>제24조(결정의 신청기간등)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p> <p>②「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p> <p>제25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7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당해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규정에 의한</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p> <p>⑤제57조제2항·제58조·제59조제4항 내지 제8항·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62조·제65조 및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단서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제7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날"로 본다.</p> <p>제72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92조 내지 제198조의2·제206조·제210조 및 동법 제211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0조중 "출원심사의 청구"는 "국내처리의 청구"로 본다.</p> <p>[적용: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0조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과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동법 제198조의2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p>		<p>수리관청 또는 동조(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와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2.11></p> <p>제26조(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출원의 표시 2. 고안의 명칭 3.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p>제27조(준용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6조, 제37조의2, 제46조,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9조, 제72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중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동항제2호중 "제5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은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으로, 동항제3호중 "제50조의3"은 "제16조의3"으로 보고,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3제3항"은 "「실용신안법」 제29조의4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 2005.9.1, 2006.4.28></p> <p>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106조,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보칙</p> <p>제73조(실용신안공보) ①특허청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공보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1.2.3></p> <p>제74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특칙)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4항, 이 법 제21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제42조에서 준</p>	<p>제5조(실용신안공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2003.6.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광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이중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사항 9.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10. 법 제27조 및 법 제4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77조, 법 제49조의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내용 10의2. 당해 고안의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2005.2.11> ③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제107조의2, 제108조 내지 제110조,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은 법 제57조 또는 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용하는 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 이 법 제49조 제2항·제3항, 제51조제5항,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 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특허법 제10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이 되거나 실용신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p> <p>제75조(실용신안등록 표시)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p> <p>제76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실용신안등록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p>제77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7조 및 제217조의2 중 "심사"는 "실용신안 기술평가"로 본다.<개정 2001.2.3></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벌칙</p> <p>제78조(침해죄) ①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79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실용신안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p> <p>제80조(허위표시의 죄)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81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실용신안등록,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2.3></p> <p>제82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83조(전문조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 2001.2.3>) 전문조사기관 또는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법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개정 2001.2.3></p> <p>제8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제1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1.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8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0조 또는 제81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p>제85조(몰수등) ①제7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성한 물품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p>제6조(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p> <p>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3.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보고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p> <p>4.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p> <p>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 및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시행령 제17조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는 "실용신안법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 출원각하결정통지서"로, 동령 제18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실용신안기술평가·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으로 본다. <개정 2001.6.27></p> <p>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1998.9.23, 법률 제5577호></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법 제59조제6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65조제1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0조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과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동법 제198조의2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동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3조(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예)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5 및 이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3항이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 고안"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고안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p> <p>제5조(종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특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법 시행일 현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부터 6년을 경과한 출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1999.6.30, 대령 제16421호></p> <p>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17247호, 2001.6.27.></p> <p>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17996호, 2003.6.1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대통령령 제19696호, 2006.9.28.></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p> <p>③(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④(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1999.7.1, 산자부령 제66호></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106조 및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된 국제출원,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에 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②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0 내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에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p> <p>③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우선권서류사본의 도달공고를 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기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신법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 신법적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약서·명세서·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신법적용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제1항 또는 종전의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된 국제출원에 대한 이 법 적용의 신청은 신청당시에 종전의 제37조제1항 및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 및 서면을 제출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의 보정은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실용신안법 제11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6412호, 2001.2.3.></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8조의2중 특허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관한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초적요건심사·실용신안등록·실용</p>	<p>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20128호, 2007.6.28.></p> <p>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6.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p> <p>⑩부터 ⑫까지 생략</p> <p>제5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20729호, 2008.2.29.>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2000.10.25, 산자부령 제114호> (특허법시행규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5호중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28호, 2001.6.30.></p> <p>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57호, 2002.2.28.></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분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03호, 2003.5.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16호, 2003.12.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신안권·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심판·제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기술평가청구서를 각하함에 있어서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를 적용한다. 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 제한에 있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을 각각 적용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6626호, 2002.1.26.> (민사소송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6766호, 2002.12.11.></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p> <p>⑨ 및 ⑩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21054호, 2008.9.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21568호, 2009.6.26.></p> <p>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23342호, 2011.1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p>	<p>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56호, 2005.2.11.></p> <p>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299호, 2005.9.1.></p> <p>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13호, 2005.11.30.></p> <p>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35호, 2006.4.28.></p> <p>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68호, 2006.9.29.></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②(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실용신안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p> <p>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7289호, 2004.12.31.> (디자인보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p> <p>⑨ 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p> <p>제39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p> <p>제41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p> <p>제53조제4항중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p> <p>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7555호, 2005.5.31.></p> <p>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7872호, 2006.3.3.></p>	<p>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p> <p>(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83호, 2006.12.29.></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실용신안등록·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된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6년 10월 1일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의 기술평가와 관련된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의견제출·보정·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건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9. 실용신안권자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4항 단서, 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p>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p> <p>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제2항 본문 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p>		<p>제24호서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서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1.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2.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3.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p>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후의 답변·보정·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8193호, 2007.1.3.></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제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5>까지 생략</p> <p><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호서식</p> <p>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p> <p>10. 실용신안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p> <p>11. 서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p> <p>12.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p> <p>13.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p> <p>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산업자원부령 제403호, 2007.6.29.></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5호, 2008.9.30.></p> <p>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52호, 2008.12.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및 제100조의2 관련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관련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제8조제3항·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p> <p><747>부터 <76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9234호, 2008.12.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9371호, 2009.1.30.></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10502호, 2011.3.30.></p> <p>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p>		<p>제2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다.</p> <p>제5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76호, 2009.6.3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38호, 2010.7.27.></p> <p>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법률 제11114호, 2011.1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72호, 2011.2.2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90호, 2011.6.23.></p> <p>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01호, 2011.9.28.></p> <p>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23호, 2011.12.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59호, 2012.6.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법률 제7555호, 2005.5.31.]</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p>	<p style="text-align: center;">실 용 신 안 법 시 행 규 칙 [산업자원부령 제287호, 2005.7.1.]</p>
		<p>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82호, 2013.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p>

기타 특허·실용신안 심사관련 규정

목 차

○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357
○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사무취급규정	380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388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411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 정 1981. 9. 1 특허청훈령 제 46호	개 정 2006. 5.10 특허청훈령 제460호
전부개정 1999. 6.24 특허청훈령 제287호	개 정 2006. 9.26 특허청훈령 제471호
개 정 2000. 1. 1 특허청훈령 제302호	개 정 2007. 3.27 특허청훈령 제493호
개 정 2000. 5.15 특허청훈령 제308호	개 정 2007. 7.31 특허청훈령 제507호
개 정 2000.11.13 특허청훈령 제316호	개 정 2008. 3.24 특허청훈령 제544호
개 정 2001. 4. 7 특허청훈령 제325호	개 정 2008. 9.30 특허청훈령 제580호
개 정 2001. 6.15 특허청훈령 제328호	개 정 2009. 6.30 특허청훈령 제611호
개 정 2002. 4. 2 특허청훈령 제344호	개 정 2009. 8.24 특허청훈령 제620호
개 정 2003.11. 4 특허청훈령 제376호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
개 정 2004. 2.25 특허청훈령 제380호	취급규정 등 개정훈령)
(PCT국제조사및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개 정 2009. 9.16 특허청훈령 제625호
개 정 2004. 4.12 특허청훈령 제384호	개 정 2010. 4.28 특허청훈령 제665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 정 2010.12.27 특허청훈령 제681호
개 정 2005. 2.15 특허청훈령 제406호	개 정 2011. 6.23 특허청훈령 제693호
개 정 2005. 5. 6 특허청훈령 제416호	개 정 2012. 7.27 특허청훈령 제718호
개 정 2005. 7. 8 특허청훈령 제423호	개 정 2013. 9.23 특허청훈령 제744호
개 정 2005.12. 8 특허청훈령 제434호	개 정 2014. 4.10 특허청훈령 제761호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개 정 2014.12.31 특허청훈령 제797호
개 정 2006. 2.27 특허청훈령 제452호	개 정 2015. 2. 3 특허청훈령 제8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9.30, 2009.9.16, 2010.4.28>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2006. 3. 3. 법률 제7872호에 의하여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삭제<2008.9.30>

3. 삭제<2008.9.30>

4. 삭제<2008.9.30>

5. “고시”라 함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6. ‘초고속심사’라 함은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된 특허출원으로 다른 우선심사 신청 출원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우선심사를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명의) ① 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 또는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제5조(감독) ①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에 소속된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및 심사파트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및 “심사파트장”이라 한다)은 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②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 및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 2013.9.23>

1. 삭제<2008.9.30>
 2.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결정
 3.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4.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5.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특허거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특허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허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특허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보정각하결정
2. (삭제)
 3. (삭제)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다만, 보정명령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심사 청구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
 6.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7.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 7의2. 「특허법」 제42조제3항·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거절이유만으로 하는 3회 이상의 거절이유통지(제22조제5항에 따른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한함)<신설 2013.9.23>

8.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 거절이유통지,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
- ④ 담당심사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담당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1.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2. 분류변경
 3. 삭제<2008.9.30>
 4.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 또는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5.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6. (삭제)
 7.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타심사관으로부터 협의심사 참여를 요청 받은 출원에 대한 심사
- ⑥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완지시
 2. 우선심사여부 결정

제6조(수석심사관 등) ① 수석심사관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삭제<2011.6.23>
2. 특허거절결정 및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특허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보정각하결정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4.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5.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② 책임심사관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견제출통지
2.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4. 협의통지

③ 선임심사관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지시 또는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를 하는 경우(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는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사보류 등<개정 2010.12.27>) ① 심사관은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이하 “심사보류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는 심사보류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0.12.27>

1.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3. 제71조에 따라 심사의견 문의를 한 경우
4. 해당 출원과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5. 제14조제5항에 따라 협의심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출원된 출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
7.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으로서 동법 제56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특허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심사보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월에 심사 착수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청구순서가 빠른 출원을 심사보류 등을 통해 심사청구순서가 늦은 출원보다 늦게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규정에 따라 심사착수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개정 2015.2.3.>

③ 제1항에 따라 심사 보류 등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월 1회 이상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심사보류 등의 기간 만료일까지 심사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⑤ 심사보류 등을 하였던 출원에서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와

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고 2개월 이내에서 심사보류 등을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른 심사보류 등을 최초로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8조(심사관 합동회의) 심사국장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심사상 판단이 어려운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2(심사부서 등의 포상) 특허청장은 심사실적, 심사품질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심사부서, 심사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3.9.23>

제2장 분류 및 심사관지정 등

제1절 분류

제9조(분류심사) 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출원과장 및 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에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과장 및 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출원과장 및 국제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개정 2011.6.23., 2013.9.23., 2014.12.31.>

② 심사관은 가분류되거나 분류가 반송된 출원 서류를 이송 또는 인계받은 날(1차 반송된 출원 서류의 경우에는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의 의견서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9.16., 2011.6.23., 2014.12.31.>

1. 일반 출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
2.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는 1주 이내
3. 초고속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는 2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출원, 심사관이 자신의 담당 분류로 주분류를 재분류 요청한 출원, 재분류 요청이 3회 이상 있는 출원 또는 재분류 요청이 있는 초고속심사신청 출원에 대하여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제11조에 따른 분류사무관 및 관련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를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09.9.16, 2011.6.23, 2013.9.23., 2014.4.10., 2014.12.31.>

④ 심사관은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메인그룹으로만 분류된 출원에 관하여 재분류를 요청함으로써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출원을 서브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거나, 메인그룹 외에 관련되는 서브그룹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⑤ 심사관은 분류를 확정함에 있어 심사상 관련이 있는 분류가 있는 경우 관련 분류 및 인덱스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심사관은 특허분류가 개정되어 분류 변경이 필요한 출원에 대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9조의2(복합기술에 대한 분류부여 등) ① 심사관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다단계 공정 또는 복합설비 내용의 출원에 대하여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2. 전체로 해당되는 분류기호가 없다면, 공정 혹은 설비로부터 얻어지는 생산물에 해당되는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출원의 주제가 특정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로도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원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 (A99Z 99/00, B99Z 99/00 등).

제10조(분류변경 등) 심사관은 심사단계에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1. 해당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류변경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에 분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제10조의2(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 ① 심사관은 정확한 선행기술검색을 위해 특허청 전산검색시스템 공보자료에 새로운 분류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기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관리과장에게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분류사무관 및 분류조정) 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기획과 내에 분류사무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4.10>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분류사무관은 분류 조정, 특허분류 개정안 검토 및 분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4.10., 2014.12.31.>
-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분류조정 요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분류사무관과 관련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그 출원의 분류를 조정하

고 그 결과를 전산입력후 담당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2013.9.23, 2014.4.10>

제12조(분류협의 등) ① 심사관은 특허분류의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분류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분류를 질의할 수 있다.<개정 2011.6.23, 2013.9.23., 2014.4.10., 2014.12.31.>

- ② 삭제<2014.4.10>
-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류사무관 및 관련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 해석기준을 정한다.<개정 2011.6.23, 2013.9.23, 2014.4.10>
- ④ 제1항에 따른 분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 ⑤ (삭제)

제2절 심사관지정

제13조(심사관의 지정) ① 심사국장은 특허분류를 기준으로 1인 이상의 심사관을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주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인 이상의 심사관 중 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 및 심사팀장을 포함하고, 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심사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2013.9.23>

④ 심사국장은 해당 심사국 내의 전보 또는 다른 심사국으로의 전보로 인하여 심사처리를 진행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출원 및 기술평가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사국장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 및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⑥ 심사국장은 같은 심사관이 계속하여 5년이상 동일 특허분류를 담당하지 않도록 주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이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9.30., 2014.12.31.>

제14조(공동심사 및 협의심사 등) ① 신임심사관(심사과장 및 심사팀장은 제외한다)은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1년(6급 신임심사관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동안 심사과장, 심사팀장 또는 다른 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9.30, 2010.4.28., 2010.12.27., 2014.12.31.>

1. 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심사관 발령 후 6개월(6급 신임심사관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경과한 신임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신임심사관(심사과장과 심사팀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 1년(6급 신임심사관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동안 심사과장, 심사팀장 또는 심사과장(심사팀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8.9.30, 2010.4.28., 2010.12.27., 2014.12.31.>

1. 공동 심사 역량이 6개월(6급 신임심사관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상인 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심사관이 특허심판원, 심사국 및 심사품질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심사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심사과장, 심사팀장 또는 심사과장(심사팀장)이 지정하는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 및 심사팀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6개월 동안 타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⑤ 담당심사관은 복합기술 출원에 대하여 부분류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⑥ 담당심사관은 외국어(영어를 제외한다) 문헌 독해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외국어 자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10.12.27>

제15조(심사관 지정변경) ① 심사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심사국장은 이종출원인 경우에 기술평가 또는 특허출원심사를 한 선심사 담당심사관이 특허출원 또는 기술평가의 후심사를 담당하도록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① 심사국장은 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임용후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심사관으로서 임용직전 3년 동안에 재직했던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심사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3절 면담

제17조(면담제도) ①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사관은 당사자와 특허청내 지정된 면담장소에서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이 면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를 할 수 없거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에 면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8.9.30>

- 1. 분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
- 2. 의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 3.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 4. 삭제<2008.9.30>
- 5. 기타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고객지원실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특허심사처리시스템의 심사보고서에 면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2011.6.23>

⑥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대리인이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 등에 그러한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거나,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출원인이 회망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직접 발송할 수 있다.

제17조의2(출장면담제도) ① 심사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당사자의 면담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를 방문하여 면담(이하 “출장면담”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당사자와 먼저 전화통화를 하되, 전화통화만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심사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면담을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출장면담은 해당 출장지역의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당사자의 사업장을 제외한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출장면담 기일의 변경 및 기록 유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3(예비심사 등) 심사관은 출원의 심사 착수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이하 이 조에서 “예비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심사의 대상출원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8부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4.12.31>

제17조의4(보정안 사전 검토 등) 심사관은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또는 보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이하 “보정안 사전 검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안 사전 검토의 대상출원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8부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4.12.31>

제3장 심사절차

제1절 방식심사

제18조(방식심사) ① 심사관은 심사진행중에 접수서류가 「특허법」 제46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에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가 적절하게 납부되지 않은 흠결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과장·국제출원과장 또는 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서류의 흠결이 출원과장·국제출원과장 또는 등록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23>

③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대한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 ① 심사관은 심사진행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적법한 출원서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과장·국제출원과장 또는 등록과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부적법한 서류가 출원과장·국제출원과장 또는 등록과장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1.6.23>

제2절 출원의 심사절차

제20조(심사의 순위) ① 출원은 심사청구 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심사청구된 출원을 적법하게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9.30, 2014.4.10>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출원 중 그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서류와 함께 대면 보고로 납품받은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심사청구 순위 이전에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4.4.10>

제21조(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 ① 심사에 착수후 적법하게 분할 또

는 변경되고 심사청구된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3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이 분할 또는 변경된 경우에 해당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처리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은 유예희망시점 또는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본조신설 2008.9.30]

제22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출원이 1출원의 범위에 위배되거나 또는 명세서 등의 기재가 불비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이 청구범위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할 수 없는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에 대하여는 실체심사에 착수한 때에 그 거절이유가 출원일의 소급여부와 관계없는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 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④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수수료 등이 적법하게 납부된 우선권 주장을 포함하는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을 그 출원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실용신안법」 제4조 또는 「특허법」 제36조 및 「실용신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청구항에 대하여 그 출원일을 소급할 수 없는 이유를 거절이유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후거절이유통지라 한다)가 아닌 거절이유 또는 최초로 통지하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이하, 최초거절이유통지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는 최후거절이유통지로 하여야 한다.

⑦ 심사관은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통지내용에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발견된 모든 거절이유를 일괄 기재하여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한다)이 「특허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① 「특허법」 제63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이하 “의견서제출기간”이라 한다) 또는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등이 지정하는 기간은 2개월 이

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매회 1개월씩 1회 또는 2회 이상 일괄하여 연장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기간연장신청서의 연장희망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을 1개월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특허법」 제46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기간의 연장은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다)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④ 출원인이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되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사관이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기간의 연장이 모두 불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⑥ 출원과장은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연장희망기간과 연장신청가능기간의 만료일이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연장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개정 2011.6.23>

⑦ 심사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제외한다)이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의 연장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 기간연장불승인 예고통지 후 기간연장을 불승인할 수 있다.<신설 2008.9.30>

제23조의2(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이 초과된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③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보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그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정각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④ 심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에서 보정각하사유가 2 이상의 보정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각하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5조(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 심사관은 분할출원(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출원일이 2006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변경출원(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199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이중출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년 ○월 ○일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도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할출원(변경출원, 이중출원)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6]

제26조(결정 등)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 변경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원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의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거절이유와 대비하여 거절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에 대하여 최종 결정(취하, 포기를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제3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라 직권보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정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되는 처분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4절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5절 일괄심사 및 보정방향 제시

<신설 2014.4.10.><개정 2014.12.31.>

제39조의2(일괄심사의 심사 착수 및 종결 처리) 심사관은 제20조 및 제66조 제1항·제2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일괄심사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0]

제39조의3(증명서류 열람 기록) 심사관은 일괄심사가 신청된 출원에 있어서 일괄심사고시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류를 열람함으로써 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한 경우에는 심사보고서에 그 증명서류의 열람 일시·장소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0]

제39조의4(보정방향 제시) 심사관은 출원의 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참고할 수 있는 보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4장 재심사 청구 등 <개정 2008.9.30>

제1절 삭제<2008.9.30>

제40조 삭제<2008.9.30>

제41조 삭제<2008.9.30>

제42조 삭제<2008.9.30>

제43조 삭제<2008.9.30>

제44조 삭제<2008.9.30>

제45조 삭제<2008.9.30>

제46조 삭제<2008.9.30>

제47조 삭제<2008.9.30>

제48조 삭제<2008.9.30>

제49조 삭제<2008.9.30>

제50조 삭제<2008.9.30>

제2절 재심사 청구 등

제51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① 특허법제67조의2 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정보개발과장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전산처리하고, 담당심사관은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2009.6.30>

제53조 삭제<2009.6.30>

제54조(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등) ①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거절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특허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 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④ 삭제<2009.6.30>

제55조(취소환송된 출원 등의 심사) ①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취 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출원 및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하여 는 그 출원서류철 또는 등록서류철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② 국 주무과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되는 출원에 관한 심결서 부 본을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심결서 부분 및 그에 첨부된 서류를 담당심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취소환송된 출원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국의 심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류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7>

⑤ 제1항에 따른 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심사관이 해당 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9.23>

제56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① 무효심판의 청구 여부는 무효사유를 안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과장(또는 심사팀장), 심사파트장 및 심사관을 포함 하는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0.12.27>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에 그 취 지를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의 각하 또는 취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절 우선심사

제57조(서류의 이송) ①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 항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 를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2011.6.23, 2013.9.23>

② 심사국장은 우선심사신청서 또는 우선심사관련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월 이 지난 후 해당 서류가 전자문서와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제58조(방식심사)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 제제88

조에 따른 심사관보(이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2014.12.31.>

②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제59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 ①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고시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7일을 기산한다.<개정 2008.9.30>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 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중간서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보완서 또는 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된 중간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보완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④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초고속심사 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9.16>

제60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①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이 있거나 고시 제4조제4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하여야 하고, 고시 제4조제4호에 따른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조사결과에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도 함께 통지한다.<개정 2008.9.30, 2010.4.28, 2010.12.27, 2011.6.23>

② 우선심사대상이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하기로 결정 또는 재결정한 후라도 심사관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착수 전에 우선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8.9.30>

제61조(의견문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당해 출원이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9.30>

제62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2010.12.27>

1.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 특허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특허심사기획조정위원회가 「특허법」 제1조 및 「실용신안법」 제1조에서 규정

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도록 결정한 경우

- 5. 긴급처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6. 출원이 취하된 경우

제63조 (삭제)

제64조 (삭제)

제65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해당출원이 고시 제 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대상(다만,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제66조(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결과가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2011.6.23., 2014.12.31.>

- 1. 고시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 터 2개월이 되는 날
- 2. 고시 제4조제3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를하기로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
- 3. 고시 제4조제4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 터 4개월이 되는 날
- 4. 제17조의3에 따른 예비심사: 출원인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날부터 2개월(고시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우선심사인 경우에는 4개월)이 되는 날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착수 전에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 또는 심사관이 해당 보정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중 늦은 날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신청급증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이내에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④ 우선심사 출원의 중간서류는 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심사관이 해당 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9.30>

⑤ 심사관은 초고속심사 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심사 결정서 발송일로부터 14일(이하 ‘초고속심사 처리기한’이라 한다)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심사결정후 보정서가 접수되는 등 초고속심사 처리기한 이내에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9.16>

⑥ 초고속심사 출원의 중간서류는 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심사관이 해당 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9.16, 2010.4.28>

제67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특허결정, 실용신안등록결정,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취하·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에는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해당 국 주무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해당 국 주무과장은 우선심사 관련

서류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심사 관련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외부 의견문의

제68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① 「특허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9.16>

② 위원 위촉기간은 당해 년도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9조(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업 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학 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이상 또는 20년 이상 공직에 있는 자
5. 변리사 또는 변호사
6. 기 타 :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준에 준하는 자

제70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① 심사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 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71조(심사의견 문의) 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분을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출원서류 부분을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으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제72조(심사의견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출원 공개된 출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출원된 기술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출원된 발명(고안)의 실시 가능성 및 그 효과가 의심스러워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출원
3. 기타 심사상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출원

제73조(심사자료의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이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선행기술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4조(의견서 제출기간) ① 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일부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견서보존) 심사의견서는 이를 출원서류철에 넣어 출원서 및 심사서류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류철이 전자서류철인 경우 심사의견서도 전자화하여 보존한다.

제76조(위원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가 제출된 출원서에 대하여 특허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선행기술조사외 단가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국방관련 출원

제77조(국방관련 출원) ① 출원이 국방상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방위사업청에 조회하는 기준은 특허청 훈령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이하 “국방관련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특허분류 등에 의한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여부조회 등 국방관련 출원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 훈령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①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확정하거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를 변경할 때(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분류기준에 해당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2013.9.23>

②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1. 국방관련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정보관리과장에게 해당 출원의 서면 출력을 의뢰하고 출력된 서면 부분 1부를 대외비로 방위사업청에 송부하여 비밀취급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청 조회결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비를 해제하고 정보관리과장에게 온라인 출원으로의 변환을 요청하여 일반출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당해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발명자(고안자)·출원인·대리인 및 그 발명(고안)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과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출력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제출된 출원에 대하여 서면 정·부분 및 플로피디스크 각 1부를 대외비로 생산한 후 해당 심사국으로 이관하고 그 출원에 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79조(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 ① 특허심사기획과장은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하여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 여부를 연 2회 이상 방위사업청에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② 심사관은 비밀로 분류된 출원이 특허(등록)결정된 때에는 등록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에게, 거절결정된 때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당해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관련서류를 등록결정 시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하고, 거절결정 시 정보관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2013.9.23>

③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시까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이 비밀로 분류된 출원을 심사한 결과 기술내용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해제 여부를 방위사업청과 협의할 수 있다.

⑤ 비밀로 분류된 출원에 대한 통지서는 대외비로 작성하고, 결재, 발송 등은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등) ① 국방관련 출원에 대한 심사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서면으로 작성된 통지서 등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접촉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기타 국방관련 출원의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허정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서류의 발송 및 반송서류의 처리

제80조(서류의 발송) ①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송달받을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 대한 온라인 발송
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 주무과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발송된 통지서가 7일 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통지서 등의 발송은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수취인이 별도로 국내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81조(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 ① 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확인을 하여 해당 심사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으로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출원인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⑤ 심사관은 제3항에 의해서도 출원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된 서류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할 수 있다.<개정 2010.4.28>

제81조의2(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 ① 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과 심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장소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④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3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⑤ 제4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제8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모형 및 견본 등의 처리

제82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① 심사관은 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출인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제83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84조 (삭제)

제6절 선행기술 조사의뢰

제85조 (삭제)

제86조(선행기술조사) ① 심사관은 매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출원을 선정(제65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5일 이내에 선정)하되,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의 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수 없다.<개정 2008.9.30., 2014.12.31.>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출원 중에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대상출원을 확정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매월 조사의뢰 현황 및 검수내역서를 작성하여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2013.9.23>

③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 물량 및 기한 내 납품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에 관한 구두설명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출원 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기간연장증명서를 작성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한 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7절 심사관의 감정

제87조(특허소송지원 등) ① 심사관은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및 기술유출과 관련하여 법원·검찰의 문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기술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청된 사건에 대해 기술 대비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요청된 사건과 관련 있는 사건(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 2. 심사관이 요청된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송부하기 이전에 관련 사건(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된 경우

② 심사관(심사관 협의체인 경우에는 주 기술분야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 대비판단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과장(팀장) 및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심사관 명의로 지원 요청기관에 의견서를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를 특허심사제도과로 송부한다.<개정 2013.9.23>

③ 제3항의 의견서 송부는 요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여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전에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지원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④ 심사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원·심사·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8절 심사관보의 지정 등

<신설 2008.9.30.><개정 2014.12.31.>

제88조(심사관보 지정 등) ① 심사국장은 특허분류의 부여 및 심사업무보좌를 위해 6·7급 중에서 심사관을 보좌하는 자(이하 “심사관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심사관보가 보좌할 심사관을 선정하고, 해당 심사관이 심사하는 특허분류의 일부를 지정하여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2013.9.23., 2014.12.31.>

③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심사관보에게 지정된 특허분류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23., 2013.9.23., 2014.12.31.>

④ 심사관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통지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본조신설 2008.9.30]

제8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7.27>

[본조신설 2009.8.24]

부칙 <제471호,2006.9.26>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07.3.27>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07.7.31>

이 규정은 200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호,2008.3.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정각하결정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정각하결정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절이유통지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0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5조제2항제1호, 제13조제6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20조, 제21조의2, 제23조,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중 고시 관련 개정부분, 제60조제1항 중 고시 관련 개정부분, 제66조,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조사관 및 예비심사관에 의한 우선심사 결정업무 처리 등과 관련한 적용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의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이의신청에 대한 지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11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재심사의 청구 관련 개정부분 및 제6조, 제13조,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대한 적용례) 제26조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등 개정훈령)
<제620호,2009.8.24>**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09.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고속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9조, 제59조 및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초고속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5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제62조 및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3호,2011.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8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3.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제7의2호 및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제7의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취소환송된 출원의 중간서류를 처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1호,2014.4.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촉 장

성명 홍길동

소속 ○○○○

귀하를 특허법 제58조 제2항 및 실용
신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심사자문위원으
로 위촉합니다.

20 . . .

특 허 청 장

서 약 서

본인은 귀 위촉에 의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
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수행 상 지득한 내용은 위촉
기간 내는 물론 해촉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특 허 청 장 귀하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정	1999.11.22	특허청훈령 제300호	개정	2009. 8.24	특허청훈령 제682호
개정	2004. 2.25	특허청훈령 제380호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등 개정훈령)		
개정	2005. 6.30	특허청훈령 제419호	개정	2010. 4.15	특허청훈령 제664호
개정	2005.12. 8	특허청훈령 제434호	개정	2011. 8.10	특허청훈령 제698호
개정	2007. 8.23	특허청훈령 제514호	(특허청사무분장규칙)		
개정	2008.12.30	특허청훈령 제595호	개정	2012. 8.22	특허청훈령 제7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15>

제2조(적용범위)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는 법령(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규칙 및 특허협력조약행정지침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0.4.15>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PCT 심사관”이라 함은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의 처리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 또는 전산처리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 ①기계고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에 소속된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및 심사파트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심사파트장”이라 한다)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 원활하고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PCT 심사관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PCT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1.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 1의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2.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의 작성
3.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 3의2.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③PCT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류변경 또는 협의심사에 대하여는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PCT 심사관은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경유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제5조(PCT 심사관 합동회의) 심사국장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심사상 판단이 어려운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PCT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분류

- 제6조(분류심사 등) ①특허심사협력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전산목록1부와 함께 이송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용역기관에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을 국제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개정 2011.8.10>
- ②PCT 심사관은 국제출원을 이송 또는 인계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PCT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분류함에 있어 심사상 관련이 있는 분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류 및 국제특허분류의 지침에서 정하는 부가정보, 인텍싱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④PCT 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원 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 (A99Z 99/00, B99Z 99/00 등)
- ⑤국제출원과장은 국제출원의 확정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을 특허심사협력과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11.8.10>
-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PCT 심사관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제출원 또는 재분류 요청이 1회 이상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특허심사협력과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조정심사관 및 관련 PCT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를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1.8.10>
- ⑦PCT 심사관은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메인그룹

으로만 분류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재분류를 요청함으로써 특허심사협력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출원을 서브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거나, 메인그룹 외에 관련되는 서브그룹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0>

- 제7조(분류협의) ①PCT 심사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지정된 국제출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분류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PCT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국제출원을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한 PCT 심사관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확정분류를 한다.
- ②PCT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내용이 동일 심사국내가 아닌 경우에는 특허심사협력과장에게 분류를 질의할 수 있다.<개정 2011.8.10>
- ③특허심사협력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조정심사관 및 관련 PCT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 해석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8.10>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가 질의된 경우의 회신은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심사국과 관련된 질의는 1주를 연장할 수 있다.
- ⑤(삭제)
- 제8조(분류변경 등) PCT 심사관은 확정분류 후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개정 2011.8.10>
1. 해당 PCT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류변경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협력과장에게 분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분류조정심사관 및 분류조정) ①심사국장은 분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분류조정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심사협력과장은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조정 신청이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분류조정심사관과 관련 PCT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그 국제출원의 분류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산입력후 담당PCT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8.10>

제3장 PCT 심사관의 지정 및 방식심사

제10조(PCT 심사관의 지정) ①심사국장은 심사관으로 발령받아 6월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포함하고, 이하 “담당 PCT 심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담당 PCT 심사관 지정은 국제특허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심사 경력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PCT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4.15>

②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PCT 심사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전기전자심사국장에게 통지하고, 전기전자심사국장은 특허심사협력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0>

③심사국장은 해당 심사국 내의 전보 또는 다른 심사국으로의 전보로 담당 PCT 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 PCT 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제10조의2(공동심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PCT 심사관은 6월간 심사과장, 심사팀장 또는 심사과장(심사팀장)이 지정하는 타 PCT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단독심사) ①PCT 심사관이 국제출원을 단독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라 6월 이상 국제출원을 공동으로 심사할 것. 다만,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부터 국제출원을 공동으로 심사한 경우에는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동으로 심사할 것.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PCT 심사” 교육을 수료할 것

②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단독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전기전자심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전자심사국장은 특허심사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8.10>

[본조신설 2010.4.15]

제11조(협의심사) 담당 PCT 심사관은 복합기술 국제출원에 대하여 타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5]

제12조(PCT 심사관 지정변경 등) ①심사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 PCT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 PCT 심사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PCT 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제13조(방식심사 등) PCT 심사관이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진행중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PCT 심사관은 이를 국제출원과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제4장 국제조사

제14조(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따른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하거나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을 함으로써 작성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사용 사본을 특허청장이 수령한 날부터 3월
2. 우선일부터 9월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제출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PCT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제1항에서 정한 작성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30>

1.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2.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3.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개월

4.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만료일 또는 서열목록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④PCT 심사관은 심사파트장,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제1항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보고하기 이전에 영어자문관에게 영어 교정 또는 번역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와 작성기한 임박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30>

⑤PCT 심사관은 제1항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용문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문헌의 사본의 첨부 곤란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12.30>

제14조의2(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①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이전에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개시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이후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그 정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1항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0]

제15조(지정기간) ①국제조사와 관련하여 PCT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0>

② 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신설 2008.12.30>

제16조(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①심사국장은 국제출원에 관한 추가 수수료이의신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3인의 PCT 심사관 합의체를 지정하고, 그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출원인의 추가수수료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0>

제17조(삭제)

제18조(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하 “이의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장은 이의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결론부분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조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절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국제출원 서류철을 국제출원과장에게 이송한다.

제19조의2(조사료 반환 통지)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인용문헌 이외의 새로운 인용문헌이 국제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배경기술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출원과장에게 이송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조사료 반환통지서(PCT/ISA/203 서식)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2.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에 대하여 특

허청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
[본조신설 2010.4.15]

제5장 국제예비심사

제20조(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등) ①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특허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수령한 경우에 예비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서 제출에 대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보정서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만료일 또는 보정서 제출일 중 이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다.

1. 국제예비심사청구서
2. 취급료 및 예비심사료
3.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②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따른 청구범위 감축·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하거나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을 함으로써 작성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우선일부터 28월
2.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 착수일부터 6월
3. 조약규칙 55.2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특허청장이 수령한 날부터 6월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제출원과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PCT 심사관은 제2항 단서에 해당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까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제1항에서 정한 작성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30>

1. 청구범위 감축·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가 납부되거나 청구범위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 추가수수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또는 감축된 청구범위의 보정서 제출이 확인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개월
2. 청구범위 감축·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청구범위의 감축도 없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3. 청구범위 감축·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4.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만료일 또는 서열목록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⑤PCT 심사관은 심사파트장,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보고하기 이전에 영어자문관에게 영어교정 또는 번역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와 작성기한 임박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30>

제20조의2(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①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이전까지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이 개시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이후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그 정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이 개시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4.15>

[본조신설 2008.12.30]

제21조(지정기간) ①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PCT 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견해서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기간 : 2월 이내
2. 기타의 지정기간 : 1월 이내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기간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비공식 의견교환) ①PCT 심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면담 또는 전화에 의한 비공식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1. 출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
2. 견해서상의 견해이유 또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기타 PCT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식 의견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

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비공식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비공식 의견교환에 관한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비공식 의견교환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식 의견교환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상기 기록서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PCT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식 의견교환 요청을 받은 자에게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공식 의견교환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견해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국제예비심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절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국제출원 서류철을 국제출원과장에게 이송한다.

제24조(국제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선행기술 조사의뢰 <신설 2008.12.30>

제25조(선행기술조사) ① PCT 심사관은 매월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게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국제출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의뢰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해진 당해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출원 중에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대상 국제출원을 확정하여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매월 조사의뢰 현황 및 검수내역서를 작성하여 특허심사협력과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8.10>

④ PCT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국제출원 중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물량 및 기한 내 납품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에 관한 구두설명을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국제출원 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⑤ PCT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기간연장승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한 후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PCT 심사관은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8.22>

[본조신설 2009.8.24]

부칙 <제514호,2007.8.23>

이 규정은 발령(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08.12.30>

이 규정은 발령(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4항 및 제20조 제5항

의 개정규정은 국제출원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인 국제출원부터 적용하고, 제 1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2> 생략

부칙 <제731호,2012.8.22>

부칙(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등 개정훈령)
<제620호,2009.8.24>

이 훈령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PCT 단독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제2호는 2010년 7월 1일부터 PCT 공동심사를 한 PCT 심사관부터 적용한다.

부칙(특허청사무분장규칙) <제698호,2011.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 등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3제3항, 제25조제3항 본문 중 “특허심사지원과장”을 “특허심사협력과장”으로 한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 정 1991.11.30 특허청고시 제 91- 4호	개 정 2009. 8.17 특허청고시 제2009-15호
전부개정 1994. 1.29 특허청고시 제 94- 2호	개 정 2009. 8.24 특허청고시 제2009-19호
전부개정 1999. 6.29 특허청고시 제 99- 5호	개 정 2009.12.18 특허청고시 제2009-42호
전부개정 2000. 7. 6 특허청고시 제2000- 3호	개 정 2010. 4.28 특허청고시 제2010- 9호
전부개정 2001. 7. 2 특허청고시 제2001- 5호	개 정 2011. 6.27 특허청고시 제2011-11호
개 정 2005. 2. 3 특허청고시 제2005- 3호	개 정 2011. 9.26 특허청고시 제2011-17호
개 정 2005. 6.29 특허청고시 제2005-15호	개 정 2012. 2.27 특허청고시 제2012- 1호
개 정 2006. 9.29 특허청고시 제2006-13호	개 정 2012. 6.27 특허청고시 제2012- 9호
개 정 2007. 3.30 특허청고시 제2007- 4호	개 정 2012.12.24 특허청고시 제2012-41호
개 정 2008. 1.28 특허청고시 제2008- 2호	개 정 2013. 2.25 특허청고시 제2013- 6호
개 정 2008. 9.30 특허청고시 제2008-21호	개 정 2013. 9.12 특허청고시 제2013-22호
개 정 2009. 2.27 특허청고시 제2009- 2호	개 정 2013.12.31 특허청고시 제2013-30호
개 정 2009. 6.26 특허청고시 제2009-11호	개 정 2014.12.31 특허청고시 제2014-3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99. 6. 30. 이전 또는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3.<삭제>
4. ‘녹색기술’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9. 30>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개정 2014.12.31>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한 출원인의 특허출원

- (6) 기타 국가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
-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개정 2008. 9. 30>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바.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 (3)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5)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 (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 (9)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
 -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 출원
-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은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
-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
- 차.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신설 2008. 9. 30>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 (1)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 1에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나.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의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 후 1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9.30, 2013.12.31>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이하 “우선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서명서 1통(별표 1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건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우선심사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면서 제4조제2호나 목 또는 하목 중 어느 하나와 제4조제4호 모두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임을 이유로 다른 우선심사 신청 출원보다 빨리 심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선행기술조사의뢰된 특허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을 제3자가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의뢰된 출원임을 표시하고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적음으로써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삭제<2006.9.29>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5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1-5호,2001.7.2>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전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05-3호,2005.2.3>

이 고시는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15호,2005.6.29>

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13호,2006.9.29>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7-4호,2007.3.30>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제6조제2항 단서·

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8-2호,2008.1.28>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제6조제2항 단서·별표 및 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8-21호,2008.9.30>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하목·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 ③(벤처기업 출원 등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의 적용례) 제4조제2호마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09-2호,2009.2.27>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제6조제2항 단서·별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1호,2009.6.26>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5호,2009.8.17>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나목, 제4조제3호라목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3호바목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 ③(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부칙 <제2009-19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2호,2009.12.18>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사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호,2010.4.28>

-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11호,2011.6.2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17호,2011.9.26>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1호,2012.2.2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9호,2012.6.2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41호,2012.12.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6호,2013.2.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22호, 2013. 9.12>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30호,2013.12.3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34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 신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개정 2014.12.31>

신청이유		증빙서류
제4조제1호에 따른 제3차 실시 출원		제3자가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진, 카탈로그 등)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 나목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녹색기술 인증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녹색인증 신청을 위한 기술 설명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전문 기업확인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녹색전문기업의 주 업종이 일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녹색인증을 위한 기술(사업)설명서, 매출비중 내역서 등]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전문 기업 확인서
	보조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산업 투자회사 투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대출실적서 등)
	집적지 및 단지	출원인이 집적지 및 단지 내 입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금융지원 인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대출실적서 등) 3.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발행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5. 기타 국가의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마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바목에 따른 국가의 신기술개발		제4조제2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에 따른 국가의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아목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 사진,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이 실시준비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시제품 사진, 견본, 카탈로그 등)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가.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다.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라.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2호자목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다른 부품.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의 출원	1. 출원발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제4조제2호자목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 등에서 선정되어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 발명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상장, 인증서, 확인서 등)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 받은 사실의 확인서, 대상 선정 공고 등)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2호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2. 상기 선행기술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의 사본 3. 특허출원된 발명과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구체적인 대비 설명서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다음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 1.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상국가등의 특허출원(이하 “대응출원”이라 한다)의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대상국가등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 대응출원에 대한 대상국가등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및 번역문

	<p>3.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응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p>
<p>제4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p>	<p>다음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제1호부터 제3호는 별지 제6호서식에 생략 이유를 기재하고 제출 생략 가능하며, 제5호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다만, 중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제5호에 있어서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만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해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2.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사본 및 번역문 3.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 4.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대응국제출원의 청구항과의 대응관계설명표 5. 대응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

	<p>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p>
--	--

[별표 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의 신청요건
(제4조제3호 관련)<신설 2013.12.31>

신청이유	신청요건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일본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p>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 2. 일본 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제4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p>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국가등의 특허출원(이하 “대응출원”이라 한다)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심사 통지서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는 경우 2. 대한민국에 출원한 특허출원(이하 “본원출원”이라 한다)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구항을 한정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제4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허청장이 대상국가등의 특허청장과	<p>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국제단계의 심사서 신규성, 진보성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p>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하 이 별표에서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국제출원의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특허요건 인정 청구항을 한정 또는 그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	---

[별지 제1호서식]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 기재요령

- 1.【제출인】, 【대리인】 및 【출원번호】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2.【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은 필요한 경우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5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3.【제출할 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벤처기업확인서 1통
- 4.【첨부서류】란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요령 제8호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전자문서로만 이용가능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서 면

[별지 제2호서식]

【서류명】특허출원과 관련되어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입수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본원출원번호】

【대응출원번호】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

※ 기재요령

1. 【대응출원번호】란에는 위 대상국가의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발행된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습니다.

예) 【대응출원】 JP 평18-1234호, 2007. 1. 1.

2.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란에는 위 대상출원과 본원출원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응출원에는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상대국의 특허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특허출원(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도 포함됩니다.

예)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대응출원 JP 18-1234은 본원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KR10-2008-12345)이 조약 우선권주장하고 있는 상대국 특허출원 JP 17-5678의 분할출원으로서 본원출원의 대응(패밀리)특허에 해당합니다.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란에는 외국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로부터 발행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명칭, 조사기관, 발행일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나. 【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조사보고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

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조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류명, 발행기관 및 발행일】국제조사보고서(ISR), 일본특허청, 2007.08.25

【서류제출여부】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선행기술】란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서 기재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명칭】란에는 선행기술문헌명(공개일)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명칭】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명칭】3GPP TR 29.802 v7.0.0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제출

5. 【선행기술과의 대비 설명】란에는 본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문헌에 기재된 발명을 대비하여 검토 결과를 기재합니다.

가. 검토 결과에는 양자의 차이점이나 본원 발명의 기술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대비설명을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2이상의 청구항을 함께 묶어 선행기술문헌과 대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선행기술문헌 중의 특정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000000에 관한 것으로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은 000000입니다.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000000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기 제1항은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구성요소로 000000를 부가하고 있어 상기 선행기술문헌과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본원 발명은 상기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규한 발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원 발명의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 제1항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역시 상기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차이가 있는 신규한 발명입니다.

서 면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12. 31>

【서류명】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대상국가등】

【본원출원번호】

【대응출원번호】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

【제출서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범위】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심사관련통지서】

【서류명 및 통지일】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심사단계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해당출원의 청구항 번호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 기재요령

1. 【대상국가등】란에는 한국 특허청이 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국가등(고시 제4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국가등: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오스트리아, EPO, 호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중 어느 한 대상국가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본원출원번호】란에는 본원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본원출원번호】 10-2014-0001234호, 2014. 1. 1., 2014. 1. 1.
3. 【대응출원번호】란에는 위 대상국가등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대응출원번호】 JP 평18-1234호, 2014. 1. 1., 2014. 1. 1.
4.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란에는 본원출원과 위 대응출원 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응출원에는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대상국가등의 출원뿐만 아니라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대상국가등의 출원과 연계되어 있음이 명확한 상대국의 다른 출원(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 조기 국내단계 진입출원)도 포함됩니다.
예) 【본원출원과 대응출원의 관계】대응출원 JP 18-1234은 본원출원(분할출원)의 원출원(KR10-2008-12345)이 조약 우선권주장하고 있는 상대국 출원 JP 17-5678의 분할출원으로서 본원출원의 대응(패밀리)출원에 해당합니다.
5.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범위】란에는 대상국가등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명 및 제출 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란에는 해당 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의 종류와 제출일, 공보발간된 경우 공보번호와 공개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AIPN(일본), public PAIR(미국), PVS online(덴마크) 등]을 통해 해당 청구범위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청구범위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청구범위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1) 【서류명 및 발행일】JP2000-123456(2000.01.01)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예2) 【서류명 및 제출일】보정서, 2009.06.25자로 일본특허청에 제출

【서류제출여부】 제출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6. 【심사관련 통지서】란에는 대응출원에 대한 대상국가등의 심사관이 통지한 실제심사 관련 서류명(거절결정서, 등록결정서, 의견제출통지서 등) 및 제출 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및 통지일】란에는 실제심사와 관련하여 통지된 서류의 명칭, 통지일 등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심사관련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AIPN(일본), public PAIR(미국), PVS online(덴마크) 등]을 통해 해당 심사관련 통지서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통지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통지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류명 및 통지일】 특허사정서, 2008.12.30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7. 【심사단계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란에는 심사관련 통지서에서 기재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명칭】란에는 인용된 선행기술문헌의 종류, 공개일(공보일)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1)【명칭】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예2)【명칭】3GPP TR 29.802 v7.0.0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etwork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제출

8.【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란에는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대응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 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대응출원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1	1	양 청구항은 동일
2	2	”
3	3	”
4	1	청구항 4는 대응출원의 청구항 1의 A라는 구성을 한정함
5	6	”
6	4	”
7	1	청구항 7은 대응출원의 청구항 1에 B라는 구성이 추가됨

[별지 제4호서식]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우선심사용)<신설 2008. 9. 30>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08. 9. 30>

특허 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우선심사용)**

【서지사항】

신청인 :	통지요청일 :
출원번호 :	출원일 :
우선권번호 :	우선권 주장일 :
특허청 통지일 :	조사기간 :

【국제특허분류(IPC)】

【검색방법 및 검색결과】

전산검색 개요	검색어						
	DB 종류						
	검색한 IPC 분류						
	조사국가	한국	미국	일본	EP	국제특허	기타

전산검색 (DB별 검색이력)	DB	검색식	검색건수	관련 선행 기술문헌

본원의 요약			
-----------	--	--	--

조사결과	주요 선행기술문헌			관련 청구항
	문헌번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중 본원과 관련된 내용	과제의 해결수단 중 본원과 관련된 내용	

대비설명 (청구항별)	문헌번호	본원과 선행기술문헌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관련도
청구항 1			
.			
.			
.			
청구항 n			
조사자	소 속	연락처	
	성 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1. 조사대상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 사본 각 1부,
2. 선행기술문헌 사본 1부

※ 기재요령

1. 【국제특허분류(IPC)】란은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에서 제출하는 경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는 전기전자심사국 또는 정보통신심사국에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분야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확정한 국제특허분류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2. 【검색방법 및 검색결과】란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조사국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의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하고 그 검색여부를 표시(○ 또는 ×)하여야 하며 추가로 검색을 실시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함

나. DB별 검색이력과 관련해서는 DB별로 최종 선행기술문헌을 찾기까지 사용한 검색식과 그에 따른 검색건수를 기재하여야 함

다. 조사결과와 관련해서는 본원 청구항 전체와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5개 이상)별로 본원과 관련된 기술내용을 위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과제의 해결수단(해당 쪽/행 등 표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본원의 관련 청구항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라. 대비설명과 관련해서는 청구항별로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선행기술문헌의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해당 쪽/행 등)하여야 함

마. 2이상의 청구항을 함께 묶어 선행기술문헌과 대비하는 경우에는 함께 기

재된 청구항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설명을 기재하여야 함

바. 관련도는 다음과 같이 PCT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재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① 「X」 : 해당문헌 하나만으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Y」 : 해당문헌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문헌과 결합되었을 때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A」 : 「X」 또는 「Y」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출원발명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첨부서류】란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 면

[별지 제5호서식]

【서류명】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선행기술조사】

【검색방법】

【검색DB】

【검색어】

【검색IPC】

【검색결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우선심사 신청이유】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기재요령

1. 【선행기술조사】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을 검색한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합니다. 선행기술문헌 검색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검색 사이트 및 검색 DB[예 : IPLD(<http://www.ipdl.inpit.go.jp>), Naver(<http://www.naver.com/>), Google(<http://www.google.co.kr>), NDSL(<http://www.ndsl.kr/index.do>), RISS(<http://www.riss4u.net/index.jsp>)] 등을 활용합니다.

가. 【검색방법】란에는 신청인이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아래에 【검색DB】, 【검색어】, 【검색IPC】란 등을 만들어 구체적인 검색 방법을 적습니다.

예) 【검색방법】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
 【검색DB】한국 특허문헌, 미국특허문헌, 일본특허문헌
 【검색어】핸드폰, 케이스, 슬라이드
 【검색IPC】H04B, H04L

나. 【검색결과】란에는 신청인이 검색한 선행기술 문헌 중 출원 발명의 청구항 전체와 비교하여 찾아낸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문헌(4개이상)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예) 1. 공개특허 제00-00000호(19xx.x.x.)
- 2. 미국특허 제00000000호(19xx.x.x.)
- 3. 일본특허공고 평00-000000호(19xx.x.x.)
- 4. 19xx.x.x.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발행, 대한화학회지, 제0권, 제0호(제0면 내지 제0면)

2.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란에는 출원 발명의 청구항과 선행기술문헌과의 대비 설명을 아래 대비표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대비표에는 전체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문헌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행기술 문헌과 해당 청구항과의 유사점, 차이점 및 대비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 유사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유사한 기술적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선행기술문헌의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당 쪽/행 등)합니다.

나. 차이점 칸에는 해당 독립항과 선행기술 문헌간에 기술적 구성의 차이를 구

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 대비 판단 칸에는 유사점, 차이점에 기초하여 해당 독립항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였는지, 선행기술문헌에 비해 얻을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라. 독립항에 대한 대비표는 반드시 작성하되 종속항에 대한 대비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선행기술 문헌명	대비 설명		
		유사점	차이점	대비 판단
1	문헌1	문헌1(3p 10줄~20줄)의 0000와 청구항1항의 △△△△가 실질적으로 대응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 xxx, xxx는 문헌1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차이점에서 나타난 구성요소 xxx, xxx를 통해 0000 라는 본원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5	문헌2	문헌2(fig1)의 0000는 청구항1항의 △△△△에 대응됨	문헌2(fig1)의 0000는 청구항1항의 △△△△의 상위 개념	문헌2의 0000를 본원 발명에서는 구성요소 △△△△로 한정하여 XXXX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10	문헌3	0000	0000	0000

3. 【우선심사 신청이유】란에는 출원 발명이 우선심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본 발명은 0000에 관한 것으로, 증빙서류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00000에 관한 것이므로 000법시행령 제X조X호 및 고시 제4조제X호X목에 해당합니다.

가. 고시제4조제2호자목(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원 발

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과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을 만들어 출원된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또는 실시 준비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출원 발명이 실시(준비) 중인지 여부】란에는 별표의 증빙서류(제품 또는 시제품의 사진, 카탈로그, 모형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시 발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실시 조건 등)를 출원 발명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출원 발명과 대응되는 시제품을 0000 소재 본 출원인의 사업장에서 xx.xx.xx자로 생산하였으며, 증빙서류1(시제품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3(시제품 사진)에 표시된 구성 1 내지 5는 출원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 A 내지 E에 대응됩니다.

(2)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란에는 출원 발명과 관련된 업종에서 업으로서 실시(준비) 중인 상황을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예) 본 출원의 출원인은 증빙서류2(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출원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있는 장치A에 관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증빙서류3(매출실적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시 발명에 대한 상당액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원 발명은 업으로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 발명이 인증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란을 만들어 출원 발명과의 업종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 본 인증 기업 A사는 증빙서류1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메라 및 방송장비 제조업이 주업종인 기업으로 본 출원 발명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고화질 CCTV와는 매우 기술적 관련성이 높으므로 업종 관련성이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개정 2013. 12. 31>

서 면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 12. 31>

【서류명】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대상국가등】

【본원출원번호】

【국제출원번호】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

【제출서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범위】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

【서류명 및 통지일】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

【명칭】

【제출여부】

(【제출생략 이유】)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

※ 기재요령

1. 【대상국가등】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대상국가등(고시 제4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국가등: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노르딕특허기구(NPI), 러시아, EPO, 캐나다, 핀란드, 호주, 스웨덴) 중 어느 한 대상국가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본원출원번호】란에는 본원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최우선일을 적습니다.
예) 【본원출원번호】 10-2014-0001234호, 2014. 1. 1., 2014. 1. 1.

3. 【국제출원번호】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되고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한정, 삭제 또는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청구항을 포함한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 PCT/US2014/123456, 2014. 1. 1., 2014. 1. 1.

4.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란에는 본원출원이 대응국제출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1)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대응국제출원의 분할출원이 본원출원에 해당합니다.
예2)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본원출원은 대응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에 해당합니다.

5.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범위】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명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란에는 해당 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의 종류와 제출일, 공보발간된 경우 공보번호와 공개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를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청구범위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다. 해당 청구범위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청구범위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1) 【서류명 및 발행일】WO/2011/123456(2011. 1. 1.)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OOOO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 예2) 【서류명 및 제출일】보정서, 2011. 1. 1자로 국제사무국에 제출
【서류제출여부】 제출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6.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란에는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명(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가. 【서류명 및 통지일】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통지된 서류의 명칭, 통지일 등을 기재합니다.
-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

통지서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다. 해당 통지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통지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 【서류명 및 통지일】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2011. 1. 1.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7.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란에는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가. 【명칭】란에는 인용된 선행기술문헌의 종류, 공개일(공보일)을 기재합니다.
-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 예1)【명칭】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 예2)【명칭】3GPP TR 29.802 v7.0.0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 제출

8.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란에는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 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1	1	양 청구항은 동일
2	2	”
3	3	”
4	1	청구항 4는 대응 청구항 1의 A라는 구성을 한정
5	6	”
6	4	”
7	1	청구항 7은 대응 청구항 1에 B라는 구성이 부가됨

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국가등이 중국인 경우(중국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만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예)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제8기재란의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는 ‘청구항 제X항은 청구항 제Y항의 A를 인용하고 있으나, 상기 A는 청구항 제Y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X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Z항은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Y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W항의 B를 인용하도록 보정되었으므로, 상기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서 청구항의 지시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는 해소되었습니다.

9.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란에는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 정 2014. 3.31 특허청고시 제2014-10호
개 정 2014.12.31 특허청고시 제2014-3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3. “출원인”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4. “심사착수”란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일괄심사설명회”란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취지를 심사관에게 설명하는 회의를 말한다.
6.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7. “예비심사”란 심사관이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괄심사의 신청인) 일괄심사는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괄심사 신청 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심사의 신청대상)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착수 전인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을 말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 청구된 출원에 한정한다.

1.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2.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제5조(일괄심사의 신청) ① 일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 담당심사관(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이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일괄심사 신청일 이후 7일부터 14일까지 중 어느 한 날을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의 어느 한 날을 희망하는 심사착수일(이하 ‘착수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착수희망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의 어느 한 날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심사종결일(이하 ‘종결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⑤ 신청인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일괄심사 방식심사) ① 특허청 일괄심사 담당자(이하 '일괄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괄심사 신청일로부터 6일이 되는 날까지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에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심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는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을 기초로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일괄심사설명회 개최일을 확정된 후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일괄심사설명회)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개최일이 확정된 일괄심사설명회에 참석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일괄심사 신청출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출원이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출원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와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하여 일괄심사 여부 및 일괄심사 대상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 담당심사관 및 신청인은 착수희망일 및 종결희망일을 기초로 실제 착수가능한 날(이하 '착수예정일'이라 한다) 및 실제 착수종결

가능한 날(이하 '종결예정일'이라 한다)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일괄심사 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우선심사의 신청 요청) ① 일괄심사 담당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3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상표등록·디자인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우선심사가 필요한 출원이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로서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9조(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일괄심사 신청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자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일괄심사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일괄심사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착수예정일에 맞추어 심사 착수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 출원의 중간서류를 종결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선행기술을 추가로 검색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35호,2014.12.3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신청이유	증빙서류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 중인 출원	<p>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3. 기타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p>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제품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2.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4.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5. 기타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p>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원된 발명, 고안, 상표, 디자인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 (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라목 및 제2호에 따른 출원	제4조제1호라목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일괄심사신청서

일괄심사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연락처】

【주소】

【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

【일괄심사 신청이유】

【증명서류】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

【일괄심사 착수희망일】

【일괄심사 종결희망일】

【일괄심사설명】

【예비심사신청여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 기재요령

1. 【신청인】란은 일괄심사 해당건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일괄심사 신청 출원의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일괄심사 대상 출원번호】란은 일괄심사를 받고자 하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를 모두 기재합니다.
3. 【일괄심사 신청이유】는 출원인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수출 촉진 출원,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합니다. 다만 착수희망일이 착수예정일보다 빠른 이유로 상표등록출원을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 중인 출원만을 기재합니다.
4. 【증명서류】란에는 제출하는 서류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 벤처기업확인서 1통
5.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란은 일괄심사 신청일 후 7일부터 14일까지로 신청하여야 하고, 【일괄심사 착수희망일】란은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신청하여야 하며, 【일괄심사 종결희망일】란은 착수희망일 후 3개월부터 1년까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일괄심사설명】란은 일괄심사 대상 출원이 하나의 제품과 관계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7. 【예비심사신청여부】란은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예비심사 신청여부를 기재합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4동
TEL : 042-481-3461 / FAX : 042-472-4743
